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 재무설계 전문자격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2019. 10.

한국FP학회
Korean Academic Society of Financial Planning

제 출 문

(사)한국FPSB 귀중

본 보고서를 귀 기관에서 발주하고 의뢰한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 재무설계 전문자격과의 연계를 중심으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10. 31.

(사) 한국FP학회 회장 박 광 수

본 보고서는 (사)한국FPSB의 후원에 의해 수행된 (사)한국FP학회의 연구용역 프로젝트 최종보고서입니다.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도성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참여연구원: 김민정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백 강 (한밭대학교 경영회계학과)

이진호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목 차>

요약문 ····· I

I. 서론 ····· 1

I. 연구의 목적 ····· 2

2. 연구의 내용 ····· 3

Ⅱ. 국내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운영 현황 및 비교 분석 ····· 4

1. 금융전문인력의 정의 및 분류 ····· 5

2. 금융전문인력 자격을 규정하는 법령 ····· 8

3.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현황 및 비교분석 ····· 15

4.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28

5. 소결: 국내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문제점 ····· 33

Ⅲ. 해외 주요국의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금융전문인력 자격간의 연계와 재무설계사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 34

1. 미국 ····· 35

2. 영국 ····· 45

3. 호주 ····· 52

4. 일본 ····· 58

5. 싱가포르 ····· 65

6. 소결: 국내 금융관련 자격제도 운영에의 시사점 ····· 70

Ⅳ. 결론: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효율적 연계 및 발전방안 ····· 72

1. 개인 재무설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 73

2. 선진국 사례의 국내자격제도 적용방안 ····· 75

3. 국내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 81

4.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발전방안 ····· 90

참고문헌 ····· 95

부 록 ····· 99

<표 차례>

<표 Ⅱ-1> 「2018년 금융인력 기초통계」 조사에 포함된 금융자격 ····· 5

<표 Ⅱ-2> 국내 금융관련 자격증 - 분야별 ····· 6

<표 Ⅱ-3> 금융상품 판매 전문인력 ····· 10

<표 Ⅱ-4> 국내 자격제도 분류 ····· 15

<표 Ⅱ-5> 국내 금융관련 자격제도 운영 현황 (2019.5.16. 기준) ····· 16

<표 Ⅱ-6> 국내 등급별 금융관련자격제도 분류 ····· 17

<표 Ⅱ-7> 재무설계 전문인력 자격증 시험과목 비교 ····· 19

<표 Ⅱ-8> 재무설계 전문인력 자격증 응시자격 비교 ····· 20

<표 Ⅱ-9> 재무설계 전문인력 자격증 합격기준 및 합격유효기간 ····· 21

<표 Ⅱ-10> 재무설계 전문인력 자격증 자격유효기간 등 ····· 22

<표 Ⅱ-11> 재무설계 전문인력 자격증 주요내용 (요약) ····· 23

<표 Ⅱ-12> 금융투자상품자문 전문인력 자격증 ····· 26

<표 Ⅱ-13> 금융·보험 NCS 분류 (2019. 9 기준) ····· 29

<표 Ⅱ-14> 금융영업 NCS 상에 제시된 자격 현황 ····· 30

<표 Ⅱ-15> PB영업 세분류 능력단위 별 관련자격사항 ····· 32

<표 Ⅲ-1> 채널별 금융투자업 비교 ····· 35

<표 Ⅲ-2> Series 65 시험의 요구 지식 ····· 38

<표 Ⅲ-3> 금융자문업자의 자격시험과 인증시험 ····· 39

<표 Ⅲ-4> 영국 자산관리시장의 주요 플레이어 ····· 46

<표 Ⅲ-5> 영국 QCT 레벨4 인증 교육과정 ····· 48

<표 Ⅲ-6> RQF 레벨 프레임워크 ····· 50

<표 Ⅲ-7> 호주 ASIC의 교육과정 예시 ····· 53

<표 Ⅲ-8> 책임자로서의 지식과 능력 요건 ····· 56

<표 Ⅲ-9> 책임자가 지식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해야 하는 일 ····· 56

<표 Ⅲ-10> 현재 자문업 인가자 자격등급에 따른 학위 취득과정 ····· 57

〈표 Ⅲ-11〉 IBF CACS의 자격시험 ····68
〈표 Ⅲ-12〉 IBF CMFAS의 자격시험 ····69
〈표 Ⅲ-13〉 IBF의 재교육프로그램 최소이수시간 ····70
〈표 Ⅳ-1〉 CFP와 해외 금융전문인력 자격증 내용 비교 ····76
〈표 Ⅳ-2〉 CFP와 해외 금융전문인력 자격증 응시자격 비교 ····78
〈표 Ⅳ-3〉 CFP와 해외 금융전문인력 자격증 담당업무 비교 ····79
〈표 Ⅳ-4〉 CFP와 해외 금융전문인력 자격증 인증유지 조건 비교 ····80
〈표 Ⅳ-5〉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증 간 연계 내용 ····82
〈표 Ⅳ-6〉 종합재무설계/자산관리 자격증 시험과목 비교 ····83
〈표 Ⅳ-7〉 AFPK와 재무설계 관련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비교 ····84
〈표 Ⅳ-8〉 CFP와 금융투자 관련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비교 ····86
〈표 Ⅳ-9〉 AFPK와 금융투자 관련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비교 ····87
〈표 Ⅳ-10〉 금융·보험 NCS 분류 (2019. 9 기준) ····89
〈부록 표 1〉 부동산투자 관련 자격증 ····99
〈부록 표 2〉 신용관리 관련 자격증 (1) ····101
〈부록 표 3〉 신용관리 관련 자격증 (2) ····102
〈부록 표 4〉 보험 관련 자격증 ····103
〈부록 표 5〉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104
〈부록 표 6〉 금융소비자보호·상담 관련 자격증 ····105

<그림 차례>

<그림 Ⅱ-1> 금융영업의 경력개발모형 ····· 31

<그림 Ⅲ-1> CFP 레벨별 출제 문항 분포 ····· 44

<그림 Ⅲ-2> 영국 자산관리시장의 경쟁구도 ····· 45

<그림 Ⅲ-3> QCF 레벨 프레임워크 ····· 49

요약문

I. 서론

1. 연구의 목적

❑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함

❑ 가계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적인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윤리성을 겸비한 재무설계 전문자격자 양성을 통한 재무설계 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함

❑ 한국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위하여 재무설계 전문인력 자격제도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금융전문인력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연구

2. 연구의 내용

❑ 국내 금융인력 전문자격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함

❑ 해외 선진국의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를 검토하여 금융전문인력 자격간의 연계사례와 재무설계와 관련된 법령이나 규제 등을 파악하여 국내 금융자격제도 연계 및 재무설계사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함

❑ 선진국 사례의 국내 자격제도 적용 방안과 국내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발전 방향, 그리고 정책적 제안을 제시함

II. 국내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운영 현황 및 비교 분석

1. 금융전문인력의 정의 및 분류

❑ 본 연구는 금융산업 선진화와 한국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위하여 재무설계 전문인력 자격제도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금융전문인력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전문인력(금융자문인력)만을 대상으로 함

❑ 재무설계는 개인의 재무목표와 성향, 재무적·비재무적 정보를 기초로 전문인의 자문에 따라 금융상품 선택과 자산운영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자문인력으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금융상품자문업”의 신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재무설계와 금융상품자문 인력의 연계가 절실히 요구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무설계 전문인력 자격제도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재무설계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재무설계 전문인력”과 관련 법령의 자격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자문 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함

2. 금융전문인력 자격을 규정하는 법령

❑ 금융자문은 투자자문, 금융상품자문, 재무설계의 세 영역으로 자문 내용을 구분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문업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서 인정(제6조)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2017)을 통해 독립투자자문업(IFA) 도입됨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자문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상품 구매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정의하나 금융상품자문 전문인력 자격요건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고 법 통과시 시행령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금융상품자문업 신설의 의의는 보험대리인 등의 자문행위를 법 체계 내에 포함시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시행하고, 금융상품자문업자에 선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상품판매업자보다 훨씬 위중한 의무를 부여하고 독립적인 자문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자문에 대한 댓가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요건 구비했다는 데 있음

❑ 미국의 등록투자자문인력(Registered Investment Adviser)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북미증권업협회에서 주관하는 시리즈 65 시험(Investment Adviser Competency Exam)에 합격해야 하나 이를 시리즈7 시험과 시리즈 66시험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Certified Financial Planner(CFP®), Chartered Financial Analyst(CFA), Chartered Financial Consultant(ChFC), Personal Financial Specialist(PFS), Chartered Investment Counselor(CIC)와 교차인정이 가능함

❑ 영국의 금융자문인력(Financial Adviser) 자격의 경우엔 금융관련 자격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FSP(Financial Skills Partnership)에서 여러 교육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인증하고, 인증프로그램을 수료 후 소정의 시험에 통과하면 자격이 주어짐. 또한 금융자문인력 자격을 위해서는 QCT(Qualification and Crefit Test) 레벨 4나 SCQF(Scottish Credit and Qualification Framework) 레벨 8을 요구함

❑ 2007년 12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금융전문인력 양성에 관련 내용을 명시함. 하지만 금융전문인력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필요경비의 지원에 대한 내

용만 포함하고 있음

❑ 2005년 6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진행된 금융허브회의 자료에 따르면, 금융허브 달성 및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전문인력의 체계적·전략적 양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산업차원의 중심축이 부재한 문제를 지적하고, 민간주도에 의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금융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이에 따라 2006년 한국금융연구원 내에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를 설치하여 금융인력정보, 금융교육정보, 자격증정보, 금융산업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나 그 역할이 유명무실함

3.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현황 및 비교분석

❑ 국내 자격증제도는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됨

- ○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으로 구분
- ○ 민간자격은 민간자격 등록, 국가공인, 사업내 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격증 중 금융관련 자격증 현황은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을 포함하여 총 134개의 자격증이 있음

❑ 국가전문자격으로는 세무사(국세청), 보험계리사(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금융위원회), 보험중개사(금융위원회), 손해사정사(금융위원회) 등 5개가 존재하고 민간자격으로는 국가공인 10개, 민간등록 117개, 사업내자격 2개 등 총 129개가 있음

❑ 본 연구에 포함하는 금융전문인력은 금융자문전문인력으로, 비교 분석에 포함하는 국내 금융자격증은 금융서비스 전반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재무설계 전문인력(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자산관리사(FP), 재무설계사(AFPK), 종합자산관리사(IFP))"과 관련 법령의 자격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자문 전문인력(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권유대행인)"에 관련된 자격증에 한정함

❑ 재무설계 전문인력 자격제도

- ○ 재무설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증은 4개로 자산관리사(FP)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이고, 재무설계사(AFPK)와 종합자산관리사(IFP)는 민간등록 자격증이며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는 국제통용자격증으로 국제FPSB의 표준규정에 따라 한국FPSB에서 시행하고 있음
- ○ 4개 자격증 모두 금융, 증권, 보험, 투자, 부동산, 세무, 법률 등의 종합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시험과목, 응시자격, 합격유효기간, 자격유효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음
- ○ 시험과목
  - 모두 재무설계/자산관리에 대한 기본지식 뿐만 아니라 보험, 투자(금융/부동산), 세금

관련 과목이 포함되어 있음

- 고령화시대의 체계적인 대비를 위해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상속과 은퇴 관련 과목은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와 재무설계사(AFPK)에서만 독립된 과목으로 다루어짐
-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와 재무설계사(AFPK) 자격증은 "재무설계 직업윤리" 과목을 별도로 시행하여 직업윤리를 강조,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과 금융상품/서비스 자문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음

○ 응시자격

- 자산관리사(FP)와 종합자산관리사(IFP)는 별도의 제한조건이 없음
-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와 재무설계사(AFPK)의 경우에는 자격관리기관(한국FPSB)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정함

○ 합격기준 및 합격 유효기간

- 4개 자격증의 시험과목들은 5~8개 과목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각각 2~3개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고, 전체합격 및 부분합격을 인정함으로써 응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있음
- 자격증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험과목들의 균형있는 합격기준(전체 평균 및 과목별 과락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며, 합격의 유효기간이 길 경우 금융소비자와 금융시장의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2년 미만의 유효기간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 자격 유효기간

- 43개 자격증은 모두 자격 취득 후 일정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며, 유효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함. 이는 종합재무설계 전문가로서 변화하는 금융시장과 제도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공신력 있는 운영을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건일 것임

❑ 금융투자 관련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 금융투자상품 전문인력 자격제도에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권유대행안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모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민간등록자격으로 관리되고 있음

○ 시험과목의 경우 각각의 금융투자관련 자격은 3~4개의 과목으로 구성됨. 각 자격증의 대상이 되는 투자상품(증권, 펀드, 파생상품 등)과 관련된 기본지식 및 법률, 직무윤리를 포함한 과목으로 시행됨

○ 응시자격의 경우 투자자산운용사, 3개 권유자문인력(증권투자/펀드투자/파생상품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보호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금융회사 종사자이어야 함

○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의 경우 별도의 합격유효기간, 자격유효기간, 인증유지조건이 존재하지 않음. 다만,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 대부분의 금융투자관련 자격은 전체 평균 7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합격이 가능하며 과목별 과락이 적용되어 과목별 정답 비율이 40~50% 이상이어야 함

○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취득하여야 하는 자격(투자권유자문인력)의 경우 다른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과 달리 투자자 보호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금융회사 종사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당사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고 금융전문인력 자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있음. 하지만 자격증 취득 후 별도의 자격유효기간과 인증유지조건이 없어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함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이에 대해 종합재무설계/자산관리 자격증에서와 같이 보수교육 또는 계속교육을 통한 금융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유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화여 표준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 금융업은 「03. 금융・보험」 대분류에 제시되어 있음

○ 「03. 금융・보험」 대분류 하위에 “01. 금융”과 “02. 보험”의 2개 중분류가 포함되어 있고, “01. 금융” 중분류 이하에는 6개 소분류(금융영업, 금융상품개발, 신용분석, 자산운용, 금융영업지원, 증권・외환)가, “02. 보험” 중분류 이하에는 3개 소분류(보험상품개발, 보험영업・계약, 손해사정)가 포함되어 있음

○ 각 소분류에는 3~6개의 세분류가 포함되어, 「03. 금융・보험」내에 총 36개의 세분류로 구분되어 있음(부록 참조)

❑ NCS에서 “PB영업” 은 금융전문인력으로서 종합재무설계 직무와 가장 가까운 직무이며, 해당 직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부를 가진 고객에 대한 재무적, 비재무적 니즈를 파악하여 니즈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로 정의함

❑ “PB영업”은 총 9개의 능력단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각 능력단위는 3~4개의 능력단위요소가 포함되어 총 31개 능력단위요소가 설정되어 있음

5. 소결: 국내 금융전문인력자격제도의 문제점

❑ 각 기관별 유사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가 공존하고 있으나 연계성, 호환성이 부족함에 따라

금융전문인력 자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분야별 자격증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컨트롤타워를 통한 통합관리가 필요

❑ 일시적, 단편적 자격시험제도가 많아 일부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전문성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함에 따라 단편적인 금융자격을 넘어 종합적인 금융관리를 위한 종합재무설계 관련 자격증의 국가기술자격 등록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고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콘트롤 타워와 계속교육, 실무역량 평가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NCS 상에 PB영업 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자격(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을 포함해야 하며 정확한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확산이 필요함

III. 해외 주요국의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금융전문인력 자격간의 연계와 재무설계사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1. 미국

❑ 투자자문시장 특성

○ 투자자문업자(IA: investment adviser)와 브로커-딜러(BD: broker-dealer)가 소매고객(retail clients)에게 금융자문(financial advic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판매기능과 투자자문의 분리된 기능별로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특징임

○ 업무 영역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문업자(RIA)와 브로커-딜러(BD)는 상이한 연방규정(federal regulation)이 적용되어 왔음

❑ 투자자문업자 등록 및 규제

○ SEC 등록 또는 주 감독당국 등록 투자자문업자의 IAR(Investment Adviser Representative)는 주 감독당국의 등록, 인가, 자격요건의 적용을 받으며IAR는 다음 중 하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NASAA Model Rule USA 2002 412(e)-1)

- Series 65 시험, Series 66 시험과 Series 7 시험
- 다음의 자격 인증 중 하나: CFP, CFA, ChFC, PFS, CIC

○ 주 감독당국은 IAR의 등록, 인가, 자격요건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음

❑ 투자자문업자 자격요건

○ 펀드, 투자성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등록투자자문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북미증권업협회(NASAA)에서 주관하는 Series 65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CFP 인증이 대체인증

중 하나로 인정됨

○ 계속교육요건(Continuing Education Requirement)에 의해 자격 취득 후에도 소정의 교육과정이 요구됨

2. 영국

❑ 투자자문시장 특성

○ 취급상품의 범위와 전속 여부에 따라 독립자문업자(IFA)와 한정자문업자(restricted advisers)로 구분되며, 인가 자격요건 등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됨

○ 자문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직접 인가를 받은(authorized) 인가업자(principal firms)와, 인가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해 인가업자의 인가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지정대리인(appointed representative, AR)으로 구분함

❑ 투자자문업자 자격요건

○ IFA는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FCA로부터 인가를 취득함

○ FSP(Financial Skills Partnership)에서 금융관련 자격제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융자문인력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QCT(Qualification and Credit Test) 레벨 4나 SCQF(Scottish Credit and Qualification Framework) 레벨 8을 요구함

○ 자격 취득 후에서 매년 3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에 참여해야 함

○ QCF(Qualification and Credit Framework)란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를 따르는 유럽 국가들이 각 나라의 고등교육제도(대학교육) 사이의 비교가능성을 담보하는 교육 수준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1999년에 도입한 제도로 CFA 인증은 QCF 레벨 7 (재무학의 석사 학위 취득)에 해당하고 CFP program은 QCF 레벨 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인정함

○ 취급상품의 범위와 전속 여부에 따라 독립자문업자(IFA)와 한정자문업자(restricted advisers)로 구분되며, 인가 자격요건 등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

3. 호주

❑ 금융자문인력의 자격요건

○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에서 AFSL(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ce) 자격을 부여

○ Regulation Guideline 146에서 보험상품, 소비자신용보험, 은행예금 등의 1종 상품과 이외

의 상품인 2종 상품으로 분류하고, 각 종류 상품을 취급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요건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음

- ○ 계속훈련요건(Continuing Training Requirements)에 의해 자격 취득 후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매년 이수해야 함
- ○ 금융자문을 하는 모든 개인과 법인은 Registered Financial Service Provider로 등록해야 하고 자격요건은 공인 기관에서 제공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시험에 통과하면 됨

❑ 금융자문업자 윤리강령 강화

-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2018.5.15일 금융자문업자 윤리준수계획(Compliance schemes for financial advisers)(안) (consultation paper)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금융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자문업자(financial adviser)'나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임
- ○ 호주에서는 금융자문업자와 재무설계사의 기능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측면이 있고, "Financial planner"라는 용어를 금융자문업자와 동일하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음

❑ 금융자문업자 자격요건 강화

-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2018.11.8일 금융자문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안을 발표한 후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 2019년 3월 강화된 규제지침을 발표함
- ○ 강화된 규제지침은 기존 금융자문업 인가자들의 조직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교육 및 훈련 기준을 만족하는 한 명 이상의 책임자가 자문상담사(adviser)들을 감독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4. 일본

❑ 일본의 자격제도는 관리주체에 따라 국가자격, 공적자격, 민간자격으로 구분함

❑ 기능과 기술을 구분하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주도로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일본자격제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기능검정제도에 따른 국가자격 중 금융관련 자격은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와 금융창구서비스(Financial Services)의 두 개 직종만 해당됨

- ○ 재무설계 기능검정은 직업 능력 개발 촉진법에 따라 2002년부터 후생노동성의 민간지정시험기관인 일본FP협회와 금융재정사정연구회에서 실시하고 있음
- ○ 재무설계기능사는 업무독점자격이 아니라 명칭독점자격으로 재무설계기능사가 아니더라도 재무설계를 할 수 있지만 재무설계기능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 ○ 재무설계기능사는 1급, 2급, 3급의 3가지 등급이 있고 각 등급별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이 있음

❑ 국가자격인 재무설계 기능검정제도와 재무설계 자격인증인 AFP/CFP의 서로 연계되어 있음

○ 일본FP협회가 주관하는 재무설계와 관련된 일본 국내의 민간자격인 AFP의 경우 국가자격인 재무설계기능사와 연계되어 있어 2급 재무설계 기능사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AFP 인증 교육을 수료하면 AFP 자격이 주어짐

○ 일본FP협회의 CFP 인증자나 일본FP협회 CFP 자격 심사 합격자는 재무설계기능사 1급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바로 1급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짐

5. 싱가포르

❑ 싱가포르 금융소비자들은 주로 자문서비스를 통해 투자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자문업자는 크게 LFAs(Licensed Financial Advisers)와 EFAs(Exempt Financial Advisers)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 금융자문업무 및 금융자문업자의 유형

○ 금융자문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싱가포르 금융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의 면허를 받아야 함

○ LFA는 Financial Advisers Act에 의해 MAS의 규제 대상이며, EFA는 LFA와 동일한 기준으로 금융자문업무를 영위하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받음

○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LFA의 임직원도 관련 면허 소지 의무가 있으며, EFA의 임직원에게는 동 의무가 없음. 하지만 LFA 및 EFA의 모든 임직원은 관련 교육 및 시험을 통해 관련 자격을 보유해야 함

❑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 싱가포르는 1974년 금융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은행, 보험회사, 증권중개회사 및 자산운용사 등 200여개 금융기관을 망라하는 금융산업협회로서의 비영리기구인 IBF(Institute of Banking and Finance)를 설립하여 금융산업, 정부기관, 훈련제공자 및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금융분야의 다양한 직업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 IBF의 네가지 자격시험 중 재무설계 및 금융자문과 관련된 자격은 CACS(Client Advisor Competency Standards)와 CMFA(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Advisory Services)로 CACS는 싱가포르에서 고소득 개인고객 대상 대면 재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PB(private banking) 전문가가 취득해야 하는 전문자격이고 CMFAS는 자본시장 및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인이 취득해야 하는 전문자격임

6. 소결: 국내 금융관련 자격제도 운영에의 시사점

❑ 금융상품 판매 및 자문서비스에 관한 규제는 나라마다 상이함

❑ 수수료 중심의 판매 관행에서 비롯되는 이해상충 문제를 근절하고 자문서비스 제공업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제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음

❑ 자문업자의 질과 자격 관리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정 이상 교육 수준과 지속 교육을 요구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융자문업을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허용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경우, 다양한 금융업권을 포함하는 국가공인교육기관을 통해 관련 자격기준을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격시험을 시행함으로서 금융관련 자격제도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음

IV. 결론: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효율적 연계 및 발전방안

1. 개인 재무설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 금융부문의 선진화는 실물부문의 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실물부문의 발전이 금융부문의 추가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구조의 선순환 확립에 필요함

❑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인한 인공지능, 핀테크 등의 기술 발전과 금융-비금융 간 서비스 융합 등 환경변화에 직면한 금융산업은 최근 지적자산을 기반으로 한 경쟁이 격화되면서 경쟁우위의 원천으로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이를 활용하여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융전문인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

❑ 거시환경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가계금융자산에 대한 자문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이미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 이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계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무설계 분야의 금융전문인력 양성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 중 하나임

2. 선진국 사례의 국내자격제도 적용방안

❑ CFP와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금융전문인력 자격증의 내용을 비교한 결과, CFP의 하위영역은 영국의 QCT, 호주의 AFSL/NCFS, 일본의 재무설계 기능검정/AFP과 가장 유사함

❑ CFP와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금융전문인력 자격증의 응시자격을 비교한 결과 일본의 자격제도가 가장 유사함

❑ CFP와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금융전문인력 자격증 취득 후 담당하는 업무를 비교한 결과는 재무설계서비스 또는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됨

❑ CFP와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금융전문인력 자격증의 인증 유지 조건을 비교한 결과 시기와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이 계속적으로 자격인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3. 국내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 금융전문인력 자격간의 연계

- ○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적격성 심사)과 한국FPSB가 인증하는 CFP/AFPK 자격제도는 시험의 core topics 와 담당업무가 유사함에 따라 두 자격제도를 연계하여 금융종사자의 자격증 시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 기존 국내 자격시험에 비해 높은 수준의 역량을 검정하고 있는 CFP, CFA 등과 같은 국제인증자격의 경우,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사례와 같이 자격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 ○ 금융상품자문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신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속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CFP/AFPK 자격증과 타 금융전문인력 자격과의 연계 현황

- ○ AFPK/CFP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을 다른 자격증이 있는 경우 전체 또는 부분면제를 해 주고 있음 (예를 들면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 경영학 석사, 재무설계학 석사는 AFPK 교육과정 전체 면제, 그리고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경영학 박사, 경제학 박사, CFA는 CFP 교육과정 전체가 면제)
- ○ 현재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증 간에는 일부 시험과목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예를 들면 펀드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자격자는 펀드투자와 투자권유과목을 면제)

❑ 종합재무설계/자산관리관련 자격증과 CFP/AFPK 연계 방안

- ○ 재무설계사(AFPK), 자산관리사(FP) 시험과목은 “상속설계”와“재무설계 직업윤리”과목을 제외하고 높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자산관리사는 AFPK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의 일부를 면제받음
- ○ 재무설계사(AFPK), 자산관리사(FP), 종합자산관리사(IFP)은 모두 자격 취득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교육 또는 계속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3개의 자

격증 중 2개 이상의 중복 자격자의 경우 계속교육 또는 보수교육의 중복 실시의 번거로움 발생함. 따라서 3개의 자격증 중 짧은 자격인증유효기간을 채택하여 계속교육 또는 보수교육으로 인정함으로써 자격취득자의 부담을 줄임

❑ 금융투자관련 자격증과 CFP/AFPK 연계 방안

○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증의 경우, 투자상품(증권, 펀드 등)과 관련된 기본지시 및 법률, 직무윤리를 평가하며 재무설계사(AFPK) 자격증의 투자설계 시험과목과 관련 내용이 유사함. 이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증 취득 시 재무설계사(AFPK) 교육 일부 과정(투자설계) 면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 취득자의 전문성 제고와 유지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후 보수교육 또는 계속교육이 의무화 된다면 CFP 자격증 또한 계속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연계 될 수 있음

❑ 국내직무표준(NCS) 측면에서 금융전문인력 자격 연계

○ NCS는 국가에서 체계화하여 표준화한 직무로 산업체에서 NCS기반 인사관리와 조직관리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CFA/AFPK 등 금융자문업 전문인력 관련 자격제도가 NCS 상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현행 NCS의 세분류에 포함된 PB영업을 구성하는 능력단위들은 모든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재무설계 영역 및 프로세스와 거의 동일함dp 따라 NCS에 종합재무설계 등 금융자문업과 관련된 세분류 추가가 이루어져야 함

4.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발전방향

❑ 금융시장에서 개인재무설계제도 효율성 제고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설계서비스의 저변 확대

○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서 개인재무설계(Personal Financial Planning)서비스의 기여정도를 재평가하고, 역할을 제고할 필요

○ 가계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가진 전문인력에 의한 가계 및 개인재무설계서비스의 역할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에 포함된 “금융상품자문업”에서 개인재무설계서비스의 역할 제고

○ 금융시장에서 활용가능한 개인재무설계 자격증의 중요성 부각

❑ 재무설계 자격증의 발전방향

○ 해외 선진국의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와 재무설계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벤치마크하여 향후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

○ 국내 금융전문 자격증 간 상호호환 및 상호연계할 필요가 있음

○ NCS는 국가에서 체계화하여 표준화한 직무로 적극적으로 상호 연계할 필요 있음

○ CFP와 AFPK 자격 기준을 현재보다 격상시켜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관련법규의 정비

○ 전문금융업으로서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를 법으로 정의하고 금융전문가로서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의 호칭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

○ 2012년 7월에 최초로 발의되어 2016년 6월 20대 국회에 재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

○ 금융거래와 관련된 민원, 분쟁 등의 처리결과에 대한 상세자료를 공개하고, 각종 사고로 금융행위의 영위가 금지된 자연인과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위반자, 금융관련 종사부적격자, 금융사기자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실명으로 투명하게 공시

❑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통합관리

○ 전문성과 윤리성이 담보되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시험을 규정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조직이 필요

○ “(가칭) 금융전문인력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전문인력자격제도의 통합적인 관리를 수행하도록 함

Ⅰ. 서론

Ⅰ. 연구의 목적

❑ 금융서비스업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함

- ○ 핀테크, 빅테크, 빅데이타 등 재무환경이 급속히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은 국가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음
- ○ 다양한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간에 커리큘럼이나 시험과목 등의 상당한 중복이 있음에도 자격제도간의 연계가 미비하여 금융서비스 종사자의 자격증 시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가계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적인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윤리성을 겸비한 재무설계 전문자격자 양성을 통한 재무설계 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함

- ○ 대부분의 한국 가계가 은퇴 이후를 위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급속도로 진행되는 한국 가계의 고령화를 고려하면 한국 가계의 재무건전성 확보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슈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 ○ 가계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윤리성을 가진 전문인을 통한 가계 및 개인의 재무설계(Personal Financial Planning) 서비스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 재무설계란 개인 및 가계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고 시행결과를 모니터링 하는 종합적 재무상담 서비스로 현금 및 부채관리, 위험관리, 투자, 은퇴, 부동산, 세금 및 상속 설계 등 개인 및 가계 경제생활에 관련되는 전 분야를 포함함
-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추진되어 2016년 6월 20대 국회에 재발의되어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기본법”에 “금융상품자문업”의 신설이 포함되어 있고 금융상품투자에 대한 자문 또한 개인재무설계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금융산업 선진화와 한국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위하여 재무설계 전문인력 자격제도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금융전문인력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연구

2. 연구의 내용

❑ 국내 금융인력 전문자격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함

❑ 해외 선진국의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를 검토하여 ·사례와 재무설계와 관련된 법령이나 규제 등을 파악하여 국내 금융자격제도 연계 및 재무설계사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함

❑ 선진국 사례의 국내 자격제도 적용 방안과 국내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발전 방향, 그리고 정책적 제안을 제시함

Ⅱ. 국내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운영 현황 및 비교 분석

1. 금융전문인력의 정의 및 분류

가. 광의의 정의에 의한 분류

❑ 2005년 6월 3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진행된 금융허브회의자료에서는 금융전문인력을 “금융에 대한 전문적 이론지식을 갖추고 특정 분야의 실무경험을 통해 해당분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즉, 예금, 보험, 투자, 여신, 금융소비자보호 및 상담 등 전 금융서비스 분야의 전문 인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를 금융전문인력에 대한 광의의 정의라고 할 수 있음

❑ 금융허브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제정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 조사에는 ‘자격증’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자격증은 <표 Ⅱ-1>과 같음

〈표 Ⅱ－1〉 「2018년 금융인력 기초통계」 조사에 포함된 금융자격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3">자격증명</th></tr>
<tr><td colspan="2">국가자격</td><td colspan="3">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td></tr>
<tr><td rowspan="8">민간자격</td><td>국가공인</td><td colspan="3">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국제금융역, 자산관리사, 신용위험관리사, 신용관리사, 외환전문역1종/2종</td></tr>
<tr><td rowspan="7">비공인(등록)</td><td rowspan="6">법정자격</td><td>투자권유 자문인력</td><td>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대행인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td></tr>
<tr><td>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td><td>투자상담관리인력</td></tr>
<tr><td>투자운용인력</td><td>투자자산운용사,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td></tr>
<tr><td>조사분석인력</td><td>금융투자분석사, 채권평가인력</td></tr>
<tr><td>위험관리전문인력</td><td>재무위험관리사</td></tr>
<tr><td>보험판매인력</td><td>변액보험판매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td></tr>
<tr><td colspan="3">은행텔러,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언더라이터, 재무설계사(AFPK), 종합자산관리사(IFP), 기타</td></tr>
<tr><td colspan="2">국제통용자격</td><td colspan="3">미국공인회계사(AICPA), 재무분석사(CFA), 재무위험관리사(FRM), 기타</td></tr>
</table>

자료: 한국금융연구원(2019), 2018년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연구용역 보고서, p.14.를 수정

○ <표 Ⅱ-1>에서는 국가자격, 민간자격(국가공인/등록), 국제통용자격으로 구분하고, 국가자격에 공인회계사 외 5개 자격증을 포함, 민간자격 국가공인 자격에 자산관리사 외 6개 자격증을 포함하고, 민간자격 비공인(등록) 자격증은 법정자격과 일반등록자격으로 구분하며 국제통용자격은 3개의 자격증과 기타로 구분됨

- 법정자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7조,「금융투자업규정」제8-1조의 "주요직무 종사자"에 대한 등록 및 관리와 "주요직무 종사자" 및 영 제56조의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에 따른 금융인력 자격으로, 사실상 민간 등록 자격증에 해당함

○ 대표적인 금융자문업 관련 자격으로 재무설계 관련 자격증은 자산관리사(국가공인/한국금융연수원 시행)와 재무설계사(AFPK/민간자격 등록/한국FPSB시행), 종합자산관리사(IFP/민간자격 등록/손해보험·생명보험협회)가 포함되어 있음

○ 한국FPSB에서 시행되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는 국제통용자격임에도 불구하고 <표 Ⅱ-1>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조사 시 "기타" 항목으로 포함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음

❑ 위의 <표 Ⅱ-1>에 제시된 자격들은 재무설계(자산관리), 투자(위험), 보험, 세금, 신용, 여신, 컴플라이언스 등 모든 금융업권의 자격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금융 분야별로 재구성하면 다음 <표 Ⅱ-2>와 같음[1)]

〈표 Ⅱ-2〉 국내 금융관련 자격증 - 분야별

분야	자격증명		
	국가자격	민간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등록
종합재무설계·자산관리		자산관리사(FP)	재무설계사(AFPK), 종합자산관리사(IFP), 소비자재무설계사, 노후재무설계상담사, 재무설계상담사, 가계재무분석사 등
금융투자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재무위험관리사,
부동산투자			부동산자산관리전문가,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
신용·여신		여신심사역, 신용상담사(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사(신용정보협회), 신용위험분석사(CRA), 신용분석사(한국금융연수원)	개인신용평가사, 신용상담사, 금융파산실무전문가 등

1) 금융인력 기초통계 조사에 포함된 자격증 이외에 산업인력관리공단의 Q-Net(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1&gSite=Q&gId=)과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pqi.or.kr/indexMain.do)를 통해 검색된 금융관련 자격증을 포함하여 집계함

보험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개인보험심사역, 기업보험심사역	4대 보험관리사(사회보험관리사), 보험심사평가사 등
세금・회계	세무사, 공인회계사		
외환		외환전문역1종/2종 국제금융역	
금융소비자보호・상담			영업점컴플라이언스오피서, 금융소비자보호상담역, 은행텔러, 프라이빗뱅커, 금융해설사,
기타			재무심리전문상담사, 재무복지상담사, 금융복지상담사, 금융컨설턴트, 투자심리상담사, 금융정보분석사 등

나. 협의의 정의에 의한 분류

❑ 본 연구는 금융산업 선진화와 한국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위하여 재무설계 전문인력 자격제도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금융전문인력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개인/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전문인력(금융자문전문인력)에 한정함

❑ 금융자문서비스 중 재무설계는 개인의 재무목표와 성향, 재무적・비재무적 정보를 기초로 전문인의 자문에 따라 금융상품 선택과 자산운영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자문인력으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금융상품자문업”의 신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재무설계와 금융상품자문인력의 연계가 절실히 요구됨

❑ 이에 본 재무설계 전문인력 자격제도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재무설계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재무설계 전문인력”과 관련 법령의 자격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자문 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함

2. 금융전문인력 자격을 규정하는 법령

❑ 금융자문은 금융과 관련한 사항 전반에 대하여 개인 등 금융거래자에게 권고하는 활동 전반을 의미함

❑ 금융자문은 다음 세 영역으로 자문 내용을 구분할 수 있음

○ 투자 자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자문하거나 일임하여 운용

○ 금융상품 자문: 금융상품 구입과 관련한 자문

○ 재무설계: 유가증권 및 금융상품과 무관하게 고객의 재무활동을 설계

가. 자본시장법상(안)에서의 금융상품자문 전문인력 자격요건

❑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문업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서 인정(제6조)

○ 투자자문업자의 등록 요건

- 법인으로 진입 자격 제한
- 최소자본금 1억원이며, 상품별로 1인의 자문인력 확보
- 펀드, 예금, RP(환매조건부채권) 등으로 자문업무 범위가 제한

○ 대리 허용은 금지하여 현행 보험대리점에서 소속 재무설계사를 통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 이해상충의 방지

○ Whole of Markets 도입: 동일한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상품을 비교, 자문하도록 규제

○ 공개 의무: 자신과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금융회사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 판매업 겸영 허용: 현행 개별 금융법상 규정된 판매업만을 경영 대상으로 허용, 실제로는 금융상품자문업자는 보험상품 판매만 가능

○ 투자매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펀드판매 금지

○ 은행이 아닌 자는 예금판매 금지

○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경우 보험판매 가능

❑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2017)을 통해 독립투자자문업(IFA) 도입

○ 독립투자자문업(IFA) 자격 요건

- 자문보수의 수취방식: 고객으로부터만 자문의 대가 수취
- 판매자와의 계열 및 겸영관계: 자문대상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업 겸영 금지
- 취급상품의 범위: 특정 금융회사가 제조 및 판매하는 상품에 국한한 자문서비스 제공 금지

나.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의 금융상품자문 전문인력 자격요건

❑ 금융상품자문업의 정의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자문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상품 구매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정의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는 금융상품자문 전문인력 자격요건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음

○ 법 통과시 시행령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됨

○ 그동안의 관행을 따른다면, 상품유형별로 관련 협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관련 협회에 등록하는 것이 전문인력 자격요건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금융상품자문은 모든 상품유형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업권별 자격시험 제도는 부적당

❑ 현재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판매 전문인력에게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자격제도는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연수원 등의 기관에서 주관하는 12개 자격이 있음(<표 Ⅱ-3> 참조)

〈표 Ⅱ-3〉 금융상품 판매 전문인력

자격명칭	주요업무
금융투자협회 주관	
증권투자상담사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증권 제외)의 투자권유 및 투자자문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 및 투자상담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 및 투자상담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 및 투자상담
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 및 투자상담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파생상품 투자권유 및 투자상담
투자자문상담사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권유 또는 투자상담
전문투자상담사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 파생상품 투자 권유 또는 투자상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주관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대리점, 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변액보험판매자격	보험회사, 대리점, 중개사에 소속되어 변액보험상품 판매모집
종합자산관리사(보험)	재무설계, 자산운용전략 수립 등에 관한 상담
한국금융연수원 주관	
자산관리사(은행)	재무설계, 자산운용전략 수립 등에 관한 상담

자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연수원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금융상품자문업 신설의 의의

○ 보험대리인 등의 자문행위를 법 체계 내에 포함시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시행하고, 금융상품자문업자에 선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상품판매업자보다 훨씬 위중한 의무를 부여

○ 독립적인 자문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자문에 대한 댓가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요건 구비

- 투자자문의 영역을 제외한 자문 활동을 통해서, 가령 재무설계와 같이 금융상품과 무관한 자문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다. 해외 금융자문업 선진국의 금융상품자문 전문인력 자격요건

❑ 미국의 등록투자자문인력(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자격

○ 등록투자자문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북미증권업협회에서 주관하는 시리즈 65 시험(Investment Adviser Competency Exam)에 합격해야 함

○ 시리즈 65 시험 이외에도 대체적인 자격 요건이 가능함

- 시리즈 7 시험과 시리즈 66 시험
- 다음의 자격인증 중 하나
  - Certified Financial Planner, CFP®
  - Chartered Financial Analyst, CFA
  - Chartered Financial Consultant, ChFC
  - Personal Financial Specialist, PFS
  - Chartered Investment Counselor, CIC

❑ 영국의 금융자문인력(Financial Adviser) 자격

○ FSP(Financial Skills Partnership)에서 금융관련 자격제도를 관리하고 있음

- 여러 교육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인증하고, 인증프로그램을 수료 후 소정의 시험에 통과하면 자격이 주어짐

○ 금융자문인력 자격을 위해서는 QCT(Qualification and Crefit Test) 레벨4나 SCQF(Scottish Credit and Qualification Framework) 레벨8을 요구함

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의 금융전문인력 양성

❑ 2005년 6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금융의 겸업화, 전문화, 정보화 등에 대응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허브 달성을 위해 금융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금융전문 인력양성”을 정책 핵심과제로 선정

❑ 2006년 6월 『금융허브 추진위원회』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을 확정, 2007년 12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이 법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3년마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 내에 금융전문인력 양성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 제10조(금융전문인력 양성)에는 금융전문인력 양성시책 수립과 추진,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 공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교육 및 훈련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제10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금융전문인력 양성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전문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을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④ 금융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금융전문인력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지정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필요경비의 지원에 대한 내용만 포함하고 있음. 즉, 금융전문인력 양성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음

❑ 특히, 제13조에서는 국내외 금융기관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금융중심지원센터" 설치 조항을 두고 있음

○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이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금융전문인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마. 「금융전문인력 양성방안」에 제시된 금융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계획

❑ 2005년 6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진행된 금융허브회의 자료에 따르면,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책 방향 중 하나로 "금융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이 제시되어 있음

❑ 금융허브 달성 및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전문인력의 체계적·전략적 양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산업차원의 중심축이 부재한 문제를 지적하고, 민간주도에 의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금융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금융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 금융전문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해 국가차원의 전략을 수립·시행
- ○ 금융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연수 수요의 파악과 이의 충족을 위한 연수기관 간 공동 협조(연수과정 개발 등)
- ○ 금융전문인력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DB 구축 및 사이트 운영, 이 사이트를 금융전문인력의 수요 및 공급을 중재하는 센터로서의 기능 부여
- ○ 금융전문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 경력개발경로(career path) 및 교육연수의 모범사례 발굴 및 제시
- ○ 금융연수기관의 역량강화 방안 수립 및 시행

❑ 이상과 같은 내용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2006년 한국금융연구원 내에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를 설치하여 금융인력정보, 금융교육정보, 자격증정보, 금융산업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 금융인력정보 : 금융산업 인력구조 현황 정보 제공
- ○ 금융교육정보 : 국내 연수기관과 대학원, 국외연수 등의 정보를 제공, 금융자격증 현황, 금융산업에 대한 정보 공유
- ○ 자격증정보 : 국가자격, 민간자격, 국제통용자격에 대한 정보(개요, 취득절차, 일정, 응시자격 등) 제시

○ 금융산업정보 : 업권별 금융기관과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 금융동향 : 금융시장과 산업에 대한 동향 및 전망, 금융이슈 등 공유

❑ 그러나 2019년 9월 현재 해당 홈페이지(https://www.fnet.or.kr/)에는 2010년 이후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거나 관련 사이트에 제시된 연수안내와 구인정보를 공유해 주는 정도로 관리되고 있어, 필요로 하는 교육연수 수요파악 및 충족을 위한 연수기관간 공동 협조(연수과정 개발 등)나 금융전문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 경력개발경로(career path) 및 교육연수의 모범사례 발굴 등은 찾아보기 어려움

3. 금융자문전문인력 자격제도 현황 및 비교분석

가. 국내 자격제도 운영 체계

❑ 국내 자격증제도는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됨

○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으로 구분

- 각각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종목과 타기관 시행종목들로 구분됨

○ 민간자격은 민간자격 등록, 국가공인, 사업내 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 민간자격 등록 :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여 운영하는 자격
- 민간자격 국가공인 :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한 자격
- 사업내자격 :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운영하는 자격

〈표 Ⅱ-4〉 국내 자격제도 분류

국가자격		민간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등록	사업내자격
-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종목 - 타기관 시행종목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		

나. 국내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현황

❑ Q-Net(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1&gSite=Q&gId=) 및 민간자격정보서비스(https://www.pqi.or.kr/indexMain.do)를 통해 금융관련 자격증을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격증 중 금융관련 자격증은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을 포함하여 총 134개의 자격증이 있음

○ 금융관련 자격증 검색은 개인 및 가계의 재무관리나 상담 등이 대상이 되므로 기업재무 전문 분야 자격증은 제외하였고, 투자, 신용, 자산관리, 재무위험, 보험, 세금, 은퇴설계, 금융소비자보호 등 개인재무설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격증을

포함함. 또한 최근 3년간 실제 운영되어 자격증 응시자 및 취득자가 있는 자격증과 자격증 운영 정보 확인이 가능한 자격증을 포함함.

❑ 검색 결과 금융관련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은 없었으며, 국가전문자격으로 세무사(국세청), 보험계리사(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금융위원회), 보험중개사(금융위원회), 손해사정사(금융위원회) 등 5개가 존재함

❑ 민간자격으로는 국가공인 10개, 민간등록 117개, 사업내자격 2개 등 총 129개가 있음

○ 민간 국가공인 자격은 자산관리사, 신용상담사 등 10종이 있으며, 신용정보협회, 한국금융연수원, 신용회복위원회, 보험연수원 등에서 관리하고 있음

○ 민간 등록 자격은 AFPK, IFP, 금융투자분석사, 펀드투자권유대행인 등 117종이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FPSB,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연수원,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등록자격을 관리하고 있음

○ 사업내자격은 건강보험정보분석사(국민건강보험공단)와 CSA(국민연금공단) 등 2개가 있음

〈표 Ⅱ-5〉 국내 금융관련 자격제도 운영 현황 (2019.5.16. 기준)

금융 분야 국가자격		금융 분야 민간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등록	사업내자격
0개	5개 (세무사, 보험계리사, 공인회계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10개 (자산관리사, 신용상담사 등) * 부분공인 1개 포함	117개 (AFPK, IFP, 금융투자분석사, 펀드투자권유대행인 등)	2개 (건강보험정보분석사, CSA)

다. 분석대상 금융자문전문인력 자격제도

❑ 본 연구에 포함하는 금융전문인력은 금융자문전문인력으로, 금융산업 선진화와 한국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위하여 재무설계 전문인력 자격제도와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 비교 분석에 포함하는 국내 금융자격증은 금융서비스 전반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재무설계 전문인력”과 관련 법령의 자격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자문 전문인력”에 관련된 자격증에 한정함

❑ 비교분석 대상 자격증은 아래와 같음

〈표 Ⅱ-6〉 국내 등급별 금융관련자격제도 분류

재무설계 전문인력 자격증	금융상품자문 전문인력 자격증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재무설계사(AFPK) 자산관리사(FP) 종합자산관리사(IFP)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권유대행인

라. 금융자문전문인력 자격제도 비교분석: CFP/AFPK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1) 재무설계 전문인력 자격제도

❑ 재무설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증으로 총 4개 자격증을 비교 분석함

- ○ 4개 자격증 중 자산관리사(FP)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이고, 재무설계사(AFPK), 종합자산관리사(IFP)는 비공인 민간자격증임.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는 국제통용자격증으로 국제FPSB의 표준규정에 따라 한국FPSB에서 시행하고 있음
- ○ 4개 자격증 모두 금융, 증권, 보험, 투자, 부동산, 세무, 법률 등의 종합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시험과목, 응시자격, 합격유효기간, 자격유효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음
- ○ 특히 재무설계사(AFPK)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자격에 해당함

❑ 시험과목

- ○ 재무설계 자격증의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재무설계에 대한 기본지식 뿐만 아니라 보험, 투자(금융/부동산), 세금 관련 과목이 포함되어 있음
- ○ 고령화시대의 체계적인 대비를 위해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상속과 은퇴 관련 교과목은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와 재무설계사(AFPK)에서만 독립된 과목으로 다루어짐
- ○ 자산관리사(FP)의 경우 보험 및 은퇴설계 과목에서 은퇴부분을 다루고 있고,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와 재무설계사(AFPK)는 “은퇴설계”와 “보험설계”를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음
- ○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와 재무설계사(AFPK) 자격증에서는 “재무설계 직업윤리” 과목을 별도로 시행함으로써 직업윤리를 강조,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과 금융상품/서비스 자문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음
- ○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의 경우 다른 자격증에서 시행하는 지식형 평가 이외에 사례형 평가가 포함되어 있어 현장실무역량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음

〈표 Ⅱ－7〉 재무설계 전문인력 자격증 시험과목 비교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재무설계사(AFPK)		자산관리사(FP)	종합자산관리사(IFP)
한국FPSB				한국금융연수원	손해/생명 보험협회 (공동관리기관)
지식형	재무설계원론	모듈 1	재무설계개론	자산관리 기본지식	파이낸셜플래닝
	재무설계 직업윤리		재무설계 직업윤리		
	부동산설계		부동산설계	비금융자산투자설계	부동산 운용설계
	상속설계		상속설계		
	은퇴설계		은퇴설계	보험 및 은퇴설계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모듈 2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투자설계		투자설계	금융자산 투자설계	금융자산 운용설계
	세금설계		세금설계	세무설계	세무설계
사례형	단일사례				
	복합사례				
	종합사례				

❑ 응시자격

○ 재무설계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자산관리사(FP)와 종합자산관리사(IFP)는 별도의 제한조건이 없으나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와 재무설계사(AFPK)의 경우에는 자격관리기관(한국FPSB)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정함

○ 특히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는 사전 자격으로 재무설계사(AFPK)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종합자산관리사((IFP)의 경우 별도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응시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종합자산관리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
- 과거에 보험모집에 관하여 수수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유용하거나 기타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행위를 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표 Ⅱ-8〉 재무설계 전문인력 자격증 응시자격 비교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재무설계사(AFPK)		자산관리사(FP)	종합자산관리사(IFP)
사전 자격	AFPK 자격				없음	없음
교육 요건	집합교육 최소 200시간 원격교육 220시간		집합교육 최소 80시간 원격교육 최소 88시간		없음	없음
교육 면제 자격	전체	공인회계사(등록), 변호사(등록), 세무무사(등록), 경영학/경제학/재무설계학 박사	전체	공인회계사(합격), 변호사(합격), 세무사(합격),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 경영학/경제학/재무설계학 석사		
	부분	-	모듈 2	FP, IFP, 투자자산운용사		
			보험 설계	손해사정사, 보험중개사		
			투자 설계	국제투자분석사, 운용전문인력, 펀드/증권/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재무위험관리사		
			부동산설계	공인중개사		

❑ 합격기준 및 합격유효기간

○ 4개 자격증의 시험과목들은 5~8개 과목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각각 2~3개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고, 전체합격 및 부분합격을 인정함으로써 응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있음

- 4개 자격증 모두 전체 평균 기준(60~70%) 및 과목별 과락기준(40% 이상 획득) 있음
- 4개 자격증 중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와 재무설계사(AFPK)의 합격기준이 가장 높음(평균 70% > 60%)

○ 합격유효기간 또한 전체합격과 부분합격에 대해 구분하고 있음

-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는 전체시험에 응시한 경우와 부분 응시한 경우로 구분됨
  - 전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전체 평균이 70% 이상이면 전체 합격이고, 지식형 중 한 과목이라도 40%미만이 나온 경우 또는 사례형에서 40%미만인 경우 과락임. 부분합격기준은 전체평균이 70%이하이나, 한 유형에서 지식형 평균이 70%이상이며, 각 과목별로 40%이상인 경우와 사례형 평균이 70%이상일 경우 합격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
  - 부분(지식형 또는 사례형) 응시한 경우, 지식형 응시 합격기준은 지식형의 전체평균 70% 이상이며, 각 과목별로 40%이상인 경우이고, 사례형 응시인 경우에는 전체 평균 7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함
- 재무설계사(AFPK)의 경우 시험합격 후 별도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는 합격월로부터

3년 이내에 유효함. 부분합격자의 경우 연이은 4회 시험에 시행되는 시험에서 다른 모듈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부분합격의 효력이 상실됨

- 자산관리사(FP)와 종합자산관리사(IFP)의 경우 합격자에 대한 별도의 인증과정이 없어 전체 합격에 대한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나, 부분합격의 경우 합격회차로부터 연이은 3회 시험까지만 유효함
-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는 연 2회, 재무설계사(AFPK)와 자산관리사(FP)는 연 3회, 종합자산관리사(IFP)는 연 1회 시험시행을 고려할 때, 종합자산관리사(IFP)의 부분합격에 대한 유효기간이 가장 길다고 할 수 있음

○ 자격증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험과목들의 균형있는 합격기준(전체 평균 및 과목별 과락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며, 합격의 유효기간이 길 경우 금융소비자와 금융시장의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2년 미만의 유효기간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표 Ⅱ-9> 재무설계 전문인력 자격증 합격기준 및 합격유효기간

구 분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재무설계사(AFPK)	자산관리사(FP)	종합자산관리사(IFP)
합격기준	전체 합격	▪ 전체 평균 70% 이상 ▪ 모든 과목 40% 이상	▪ 전체 평균 70% 이상 ▪ 모든 과목 40% 이상	▪ 1부, 2부 모두 평균 60% 이상 ▪ 모든 과목 40% 이상	▪ 파트1, 2 모두 합격
	부분 합격	▪ 지식형 : 평균 70% 이상/과목별 40% 이상 ▪ 사례형 : 평균 70% 이상	▪ 모듈별 평균 70% 이상 ▪ 해당 과목 40% 이상	▪ 1부 또는 2부만 합격 시	▪ 과목별 40% 이상 ▪ 파트별 평균 60% 이상
합격유효기간	전체 합격	▪ 합격월로부터 5년 이내에 실무경험 인증 필요	▪ 합격월로부터 3년	▪ -	▪ -
	부분 합격	▪ 부분 합격 후 1년 이내(연이은 2회 시험)	▪ 합격회차로부터 연이은 4회 시험	▪ 합격회차로부터 연이은 3회 시험(년수 제한 2년)	▪ 파트별 부분합격 후 연속되는 3회의 시험응시까지

❑ 자격유효기간 등

○ 4개 자격증은 모두 자격 취득 후 일정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며, 유효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이는 종합재무설계 전문가로서 변화하는 금융시장과 제도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공신력 있는 운영을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건일 것임

<표 Ⅱ-10> 재무설계 전문인력 자격증 자격유효기간 등

구 분	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	재무설계사(AFPK)	자산관리사(FP)	종합자산관리사 (IFP)
자격유효 기간	5년	3년	3년	2년
인증유지 조건	2년마다 자격인증 갱신 필요 (계속교육 30학점)	2년마다 자격인증 갱신 필요 (계속교육 20학점)	보수교육	보수교육 이수
기타	▪ 인증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 완료 ▪ 유효기간 지난 후 갱신신청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경과된 기간만큼 기간 계산된 계속교육학점을 추가로 취득	▪ 합격자는 인증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격 유효기간 내에 인증 신청 가능 ▪ 합격 후 결과월에 따른 계속교육학점 요건 충족한 후 인증 신청 가능	▪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수교육 이수 시까지 자격 일시 정지, 이수 후 자격 부활	▪ 시험 합격 후 종합자산관리사 등록교육 이수 하여야 함

<표 Ⅱ-11> 재무설계 전문인력 자격증 주요내용 (요약)

구 분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재무설계사(AFPK)	자산관리사(FP)	종합자산관리사(IFP)
자격 등급		국제공인자격증	민간자격 - 등록	민간자격 - 국가공인	민간자격 - 등록
자격 관리 기관		한국FPSB	한국FPSB	한국금융연수원	손해/생명 보험협회 (공동관리기관)
자격 주요 내용 및 직무		재무설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Knowledge), 전문기술(Skill) 및 전문능력(Ability)을 검증	금융, 증권, 보험, 투자, 부동산, 세무, 법률 등의 종합지식을 이용하여 개인의 재무상황을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고객의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무계획을 수립, 실행 및 상담하는데 필요한 능력의 보유여부를 검정	금융기관 영업부서의 재테크팀, 또는 개인자산관리팀에서 고객의 수입과 지출, 자산 및 부채현황, 가족상황 등 고객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고객이 원하는 LIFE PLAN상의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산설계에 대한 상담과 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실무처리능력을 검정	고객의 재무상태 및 투자성향 등을 수집분석하고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하여 상담에 응하거나 전반적인 재무설계를 하여 그 실행을 돕는 능력을 검정
시험 과목		[지식형] 재무설계개론 재무설계직업윤리 은퇴설계 부동산설계 상속설계 위험관리와보험설계 투자설계 세금설계 [사례형] 단일사례 복합사례 종합사례	[모듈1] 재무설계개론 재무설계직업윤리 은퇴설계 부동산설계 상속설계 [모듈2] 위험관리와보험설계 투자설계 세금설계	[1부] 자산관리 기본지식 세무설계 보험 및 은퇴설계 [2부] 금융자산 투자설계 비금융자산 투자설계	[파트 1] 파이낸셜플래닝 세무설계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파트 2] 금융자산 운용설계 부동산 운용설계
응시 자격		- 사전자격 : AFPK - 한국FPSB에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AFPK 교육과정 수료자(집합교육 최소 200시간, 원격교육 220시간)	- 한국FPSB에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AFPK 교육과정 수료자 (집합교육 최소 80시간, 원격교육 88간)	제한없음	제한없음
합격 기준	전체 합격	▪ 전체 평균 70% 이상 ▪ 모든 과목 40% 이상	▪ 전체 평균 70% 이상 ▪ 모든 과목 40% 이상	▪ 1부, 2부 모두 평균 60% 이상 ▪ 모든 과목 40% 이상	▪ 파트1, 2 모두 합격
	부분 합격	▪ 지식형 : 평균 70% 이상/과목별 40% 이상 ▪ 사례형 : 평균 70% 이상	▪ 모듈별 평균 70% 이상 ▪ 해당 과목 40% 이상	▪ 1부 또는 2부만 합격 시	▪ 과목별 40% 이상 ▪ 파트별 평균 60% 이상

합격 유효 기간	▪ 합격월로부터 5년 이내에 실무경험 인증 필요 ▪ 부분 합격 후 1년 이내(연이은 2회 시험)	▪ 전체합격:합격월로부터 3년 ▪ 부분합격:합격회차로부터 연이은 4회 시험	▪ 부분합격:합격회차로부터 연이은 3회 시험(년수 제한 2년)	▪ 부분합격:파트별 부분합격 후 연속되는 3회의 시험응시까지
자격 유효 기간	5년	3년	3년	2년
인증 유지 조건	2년마다 자격인증 갱신 필요 (계속교육 30학점)	2년마다 자격인증 갱신 필요 (계속교육 20학점)	보수교육	보수교육 이수
기타	▪ 인증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신청 완료 ▪ 유효기간 지난 후 갱신신청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경과된 기간만큼 기간 계산된 계속교육학점을 추가로 취득	▪ 합격자는 인증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격 유효기간 내에 인증 신청 가능 ▪ 합격 후 결과월에 따른 계속교육학점 요건 충족한 후 인증 신청 가능	▪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수교육 이수 시까지 자격 일시 정지, 이수 후 자격 부활	▪ 시험 합격 후 종합자산관리사 등록교육 이수 하여야 함

2) 금융투자상품자문 전문인력 자격제도

❑ 금융투자상품 전문인력 자격제도에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모두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민간등록자격으로 관리되고 있음

- ○ 투자권유자문 자격 :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 펀드, 파생상품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로 하는 자격
- ○ 투자권유대행 자격 :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증권(펀드)나 증권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격

❑ 시험과목

- ○ 3~4개의 과목으로 구성
- ○ 해당 상품의 기본지식 및 직무윤리와 투자자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

○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과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경우 직무윤리 과목이 포함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의 경우 “펀드일반”에 직무윤리, 투자자분쟁예방 내용이 포함

○ 투자권유대행인(펀드, 증권) 의 경우 “ 투자권유” 과목에 관련 법규, 영업실무, 직무윤리, 투자자분쟁예방, 투자권유사례분석 등이 포함

❑ 응시자격

○ 투자권유자문인력(증권자/펀드/파생상품)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금융회사 종사자이어야 함

○ 투자권유대행인(증권/펀드)의 경우 특별한 응시자격 없음

❑ 합격기준

○ 투자권유자문인력 : 전체평균 70% 이상, 모든 과목 50% 이상 과락 적용

○ 투자권유대행인 : 전체평균 60% 이상, 모든 과목 50% 이상 과락 적용

❑ 자격유지조건

○ 관련 투자자보호교육을 사전 이수하고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업무수행 가능

○ 전문인력 등록 전 사전교육(등록교육) 필요

○ 등록 이후 2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필요

○ 투자상담관리인력 및 자본금 1억 투자자문사의 자문인력은 매년 이수

○ 전문인력 자격요건 충족일, 보수교육 이수일이 5년 경과한 경우 자격별 전문성강화교육 이수 필요

❑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취득하여야 하는 자격(투자권유자문인력)의 경우 다른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과 달리 투자자보호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금융회사 종사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음. 이는 직접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당사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고 금융전문인력 자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자격증 취득 후 별도의 자격유효기간과 인증유지조건이 없어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함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이에 대해 종합재무설계/자산관리 자격증에서와 같이 보수교육 또는 계속교육을 통한 금융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유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II-12〉 금융투자상품자문 전문인력 자격증

구 분	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	펀드	파생상품
자격 등급	민간자격 - 등록	민간자격 - 등록	민간자격 - 등록
자격 관리 기관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자격 주요 내용 및 직무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파생결합증권 제외), 채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로 하는 자격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합격해야하는 자격시험	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로 하는 자격시험
시험 과목	▪ 증권분석 ▪ 증권시장 ▪ 금융상품 및 직무윤리 ▪ 법규 및 세제	▪ 펀드일반 ▪ 파생상품펀드 ▪ 부동산펀드	▪ 파생상품 I ▪ 파생상품 II ▪ 리스크관리 및 직무윤리 ▪ 파생상품법규
응시 자격	투자자 보호 교육 사전 이수한 금융회사 종사자	투자자 보호 교육 사전 이수한 금융회사 종사자	투자자 보호 교육 사전 이수한 금융회사 종사자
합격 기준	▪ 전체 평균 70% 이상 ▪ 모든 과목 50% 이상	▪ 전체 평균 70% 이상 ▪ 모든 과목 50% 이상	▪ 전체 평균 70% 이상 ▪ 모든 과목 50% 이상
기타	투자권유자문인력자격증을 취득해야 상품 판매를 할 수 있음.		

<표 Ⅱ-12 계속> 금융투자상품자문 전문인력 자격증

구 분	투자권유대행인	
	펀드	증권
자격등급	민간자격 - 등록	민간자격 - 등록
자격관리기관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자격주요내용 및 직무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등은 제외)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도는 신탁계약(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의 자격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등을 제외한다.) 및 영 제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의 자격
시험과목	▪ 펀드 투자 ▪ 투자 권유 ▪ 부동산펀드	▪ 금융투자상품 및 증권시장 ▪ 증권투자 ▪ 투자권유
응시자격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합격기준	▪ 전체 평균 60% 이상 ▪ 모든 과목 50% 이상	▪ 전체 평균 60% 이상 ▪ 모든 과목 50% 이상
기타	* 과목면제대상 종전의 증권펀드투자상담사(간접투자증권판매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1과목(펀드투자), 제2과목(투자권유) 면제 * 응시불가 종전의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시험 응시 불가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제외)에 대한 매매체결 및 투자자문 업무 종사 불가(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 합격 필요)

4.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가. 금융업 직무와 국가직무능력표준

❑ 금융전문인력은 금융에 대한 전문적 이론 지식은 물론 실무 경험을 통해 금융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 금융전문인력이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의 하나로 특정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거나, 일부 특정 직무에 있어서는 해당 자격증을 득하지 않으면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기도 함

❑ 금융업의 직무는 업권별로 다양하나 "금융인력 기초통계분석 및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는 경영관리, 영업·마케팅, 영업지원, 자산운용, 자산관리, 보험, 투자은행 등으로 구분함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화여 표준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 금융업은 「03. 금융·보험」 대분류에 제시되어 있음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Knowledge)·기술(Skill)·태도(Attitudes)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화여 표준화한 것

○ 「03. 금융·보험」 대분류 하위에 "01. 금융"과 "02. 보험"의 2개 중분류가 포함되어 있고, "01. 금융" 중분류 이하에는 6개 소분류(금융영업, 금융상품개발, 신용분석, 자산운용, 금융영업지원, 증권·외환)가, "02. 보험" 중분류 이하에는 3개 소분류(보험상품개발, 보험영업·계약, 손해사정)가 포함되어 있음

○ 각 소분류에는 3~6개의 세분류가 포함되어, 「03. 금융·보험」내에 총 36개의 세분류로 구분되어 있음 (<표 II-14>참조)

<표 II-13> 금융·보험 NCS 분류 (2019. 9 기준)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1. 금융	01. 금융영업	01. 창구사무
		02. 기업영업
		03. PB영업
		04. 카드영업
		05. 여신전문금융영업
	02. 금융상품개발	01. 여수신상품개발
		02. 투자상품개발
		03. 연금상품개발
		04. 카드상품개발
	03. 신용분석	01. 개인신용분석
		02. 기업신용분석
		03. 여신심사
	04. 자산운용	01. 펀드운용
		02. 주식·채권운용
		03. 파생상품운용
		04. 대체투자
		05. 신탁자산관리
	05.금융영업지원	01. 결제
		02. 채권추심
		03. 리스크관리
	06. 증권·외환	01. 증권거래업무
		02. 외환·파생업무
		03. 인수업무
		04. 증권상장업무
		05. 외화조달·외화대출업무
		06. 무역금융업무
02. 보험	01. 보험상품개발	01 보험동향분석
		02. 보험상품개발
		03. 보험계리
	02. 보험영업·계약	01. 보험모집
		02. 보험계약심사
		03. 보험계약·보전
		04. 위험관리
	03. 손해사정	01. 재물손해사정
		02. 차량손해사정
		03. 신체손해사정

나. NCS에 제시된 금융자문전문인력

❑ NCS 중분류에 포함된 "01. 금융영업"의 『NCS 활용패키지』에 제시된 관련 자격현황이 아래와 같이 제시되어 있음

○ 국가자격(2종) : 공인회계사, 세무사

○ 공인민간자격(6종) : 외화전문역, 신용위험분석, 자산관리사, 국제금융역, 여신심사역, 신용분석사

○ 등록민간자격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표 Ⅱ-14〉 금융영업 NCS 상에 제시된 자격 현황

자격 구분	중분류	소분류	종 목	등 급	취득자수(명)			
					'14년(명)	'15년(명)	'16년(명)	누 계
국가 자격	01. 금융	01. 금융영업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1차	2,467	3,086	3,145	8,698
				공인회계사2차	886	917	909	2,712
			세무사	세무사1차	2,218	1,894	2,988	7,100
				세무사2차	631	630	634	1,895
자격 구분	중분류	소분류	등 급	소관부처	취득자수(명)			
					'14년(명)	'15년(명)	'16년(명)	누 계
공인 민간 자격	01. 금융	01. 금융영업	외환전문역 Ⅰ,Ⅱ종	(사)한국금융연수원	5,364	5,997	5,674	17,035
			신용위험분석사(CRA)	(사)한국금융연수원	29	38	18	85
			자산관리사(FP)	(사)한국금융연수원	1,560	1,564	1,589	4,713
			국제금융역(CIFS)	(사)한국금융연수원	28	19	23	70
			여신심사역(CLO)	(사)한국금융연수원	69	47	66	182
			신용분석사(CCA)	(사)한국금융연수원	679	774	1,099	2,552

자료: 금융영업 NCS 활용패키지 pp.21-23.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https://www.ncs.go.kr/index.do)

❑ "01. 금융영업"에 대해 제시된 경력개발경로는 다음 그림과 같음. 이 중 "PB영업"은 직능수준 4~5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개인금융 업무에서는 상위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음. 투자사후관리 등 포함된 9개의 항목들은 "PB영업" 직무를 위해 설정된 능력단위들임

직능수준 / 직능유형	창구사무	기업영업	PB영업	카드영업	여신전문 금융영업
6		기업고객관리 거래 제안·협상 가망기업 고객 발굴			
5		기업 거래심화 거래신청 심사·승인 기업고객니즈 파악·분석 기업고객 상담 대상기업분석	투자 사후관리 고객 제안·실행 비금융자산 상담·자문 금융자산 투자설계		설비금융영업 기업여신영업 여신전문금융심사
4	방카슈랑스 세일즈 펀드 세일즈	거래약정 고객접촉활동 ·관계형성	PB컴플라이언스 고객관리 고객정보수집분석 고객상담 고객창출	기업영업 제휴영업 회원마케팅 가맹점마케팅 신용리스크관리	자동차 리스영업 여신전문금융회계 여신전문금융 컴플라이언스 여신전문금융 채권관리
3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대출세일즈 신용카드 세일즈 외국환거래 제신고 처리 예금상품 세일즈			개인영업 심사관리 발급관리 국내 정산관리 국제 정산관리 고객상담	여신전문금융 채널관리
2	전자금융 서비스 출납관리 부수업무 처리 입지급 거래 예금 관리				자동차 할부대출영업 여신전문금융 사후관리

<그림 Ⅱ-1> 금융영업의 경력개발모형

자료: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https://www.ncs.go.kr/index.do)

❑ NCS에서 “PB영업” 은 금융전문인력으로서 종합재무설계 직무와 가장 가까운 직무이며, 해당 직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부를 가진 고객에 대한 재무적, 비재무적 니즈를 파악하여 니즈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 “PB영업”은 총 9개의 능력단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각 능력단위는 3~4개의 능력단위요소가 포함되어 총 31개 능력단위요소가 설정되어 있음.

○ 능력단위별로 해당 직무의 목적, 업무범위, 주요 책임, 요구받는 역할, 직무 수행 요건 등 직무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직무기술서에는 “관련자격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 직무기술서 : 각 능력단위별로 해당 직무의 목적과 업무의 범위, 주요 책임, 요구받는 역할, 직무 수행 요건 등 직무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문서

○ 모든 능력단위에 자산관리사(CFP), 자산관리사(FP)가 포함되어 있으나 정확한 명칭 사용되지 않음

- CFP : 자산관리사 국제공인재무설계사

○ 금융자산 투자설계, 비금융자산 상담자문, 고객제안실행, 투자사후관리, 고객관리 능력단위에 투자자산운용사, 투자상담사 등의 자격증 포함

〈표 Ⅱ-15〉 PB영업 세분류 능력단위 별 관련자격사항

능 력 단 위	수준	능 력 단 위 요 소	직무기술서 상 관련자격사항	
고객창출	4	대상고객선정하기 / 분석하기 / 접근하기		자산관리사 (CFP) 자산관리사 (FP)
고객상담	4	상담 준비하기 / 실행하기 / 사후관리하기		
고객정보수집·분석	4	재무목표 파악하기, 투자성향 파악하기 재무적/비재무적 정보 수집·분석하기		
금융자산 투자설계	5	국내·외 경제환경·금융시장 분석하기 자산배분전략 수립하기, 금융상품 분석하기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투자자산운용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국제금융역(CIFS), 외환전문역1/2 (CFES)	
비금융자산 상담·자문	5	부동산/세무설계/생애설계/ 실물자산상담·자문하기		
고객제안·실행	5	제안서 작성하기 / 설명하기 / 조정하기		
투자 사후관리	5	투자성과 점검하기 / 보고하기 /재조정하기		
고객관리	4	고객정보 갱신하기, 고객불편사항 확인하기 고객관계 강화하기		
PB컴플라이언스	4	고객정보 보호하기, 불완전판매 방지하기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하기		

* 출처 :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https://www.ncs.go.kr/index.do), PB영업 NCS 활용패키지

5. 소결: 국내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문제점

❑ 각 기관별 유사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가 공존하고 있으나 연계성, 호환성이 부족함

○ 유사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간의 업무 교류가 없어 호환이 불가능함

○ 금융전문인력 자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분야별 자격증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

➜ 이를 중심으로 전문분야별 자격증 관리 및 자격증간 상호 업무호환/연계 관리되어야 할 것임

❑ 일시적, 단편적 자격시험제도가 많아 일부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전문성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함

○ 단편적인 금융자격을 너머 종합적인 금융관리를 위한 종합재무설계 관련 자격증의 국가기술자격 등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자격취득 후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자격의 계속 인정 방법 필요

- 계속교육, 보수교육 진행

○ 이론 지식 이외에 실무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이 추가적으로 필요

➜ 컨트롤타워를 통한 계속(보수)교육 과정 개발 및 외부 교육기관의 계속(보수)교육의 질 관리 체계 마련 필요

❑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NCS 상에 금융자문업 관련 직무 미포함

○ 재무설계와 유사한 PB영업 포함되어 있으나 직무정의 상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를 지님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자격(국제공인재무설계사, CFP)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NCS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며, 정확한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확산이 필요함

Ⅲ. 해외 주요국의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금융전문인력 자격 간의 연계와 재무설계사의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1. 미국

가. 투자자문시장 특성

❑ 미국은 투자자문업자(IA: investment adviser)와 브로커-딜러(BD: broker-dealer)가 소매고객(retail clients)에게 금융자문(financial advic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판매기능과 투자자문의 분리된 기능별로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특징

○ 투자상품의 판매업자(Broker-dealer)와 투자자문업자(RIA: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를 다르게 정의하고 다른 의무를 부여

○ 판매겸업을 금지하지 않아서 한 인력이 동시에 두 가지 기능을 보유할 수 있음

〈표 Ⅲ-1〉 채널별 금융투자업 비교

구분	Investment Adviser (RIA)	Broker-Dealer (BD)	Bank
성격	자문·일임·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은행
등록	SEC, 주 증권당국	SEC, FINRA	(국법은행) OCC (주법은행) 주정부
법령	Investment Advisers Act	Securities Exchange Act	National Bank Act 등
범위	자문, 일임, 집합투자	주식, 채권, 펀드 등 매매·중개	펀드 판매 등 (대부분 Broker-dealer와 계약을 통해 수행)

자료: 임병태(2017)

❑ 업무 영역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문업자(RIA)와 브로커-딜러(BD)는 상이한 연방 규정(federal regulation)이 적용되어 왔음

○ 투자자문업자(RIA)는 1940년 투자자문업법(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IAA)을 통해, SEC 또는 주 감독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음

○ 브로커-딜러(BD)는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SEC)의 규정(44 Stat. 881)을 적용 받음과 동시에, 독립된 자율규제기구(independent self-regulatory organization)로서 FINRA의 감독을 받고 있음

나. 투자자문업자 등록 및 규제[2)]

❑ 투자자문업자 등록

- ❍ 브로커-딜러(BD)는 일반적으로 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의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브로커-딜러의 관련인(related person, 법인 및 자연인 개인을 포함)의 경우에는 증권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별도의 자격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 ❍ 투자자문업자(RIA)는 관리대상 자산 규모가 2,500만 달러 이상이면 SEC에, 그 이하이면 주 증권당국에 등록해야 함
  - 관리자산이 2,500만 달러 미만인 경우 SEC 등록을 금지(Advisers Act Sec 203A)
  - 2011.7.21일, 도드-프랭크법에서 관리자산 한도를 1억 달러로 상향
- ❍ SEC 등록 투자자문업자나 주 감독당국 등록 투자자문업자의 IAR(Investment Adviser Representative)는 주 감독당국의 등록, 인가, 자격요건의 적용을 받음
- ❍ IAR(Investment Adviser Representative)는 다음 중 하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NASAA Model Rule USA 2002 412(e)-1)
  - Series 65 시험(NASAA Uniform Investment Adviser Law Examination)
  - Series 66 시험(NASAA Uniform Combined State Law Examination)과 Series 7 시험(NASD General Securities Representative Examination)
  - 다음의 자격 인증 중 하나를 취득한 경우
    - Certified Financial Planner, CFP
    - Chartered Financial Analyst, CFA
    - Chartered Financial Consultant, ChFC
    - Personal Financial Specialist, PFS
    - Chartered Investment Counselor, CIC

2) 박영석 외 2인(2013), 최훈(2017)을 참조

❑ 투자자문업자 등록 절차

○ SEC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Part 1A, 주 금융당국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Part 1B를 제출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함

○ Form ADV는 Part 1과 Part 2 두 부분으로 나뉘며, IARD(Investment Adviser Public Disclosure)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함

- 그 내용은 IAPD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공시
- Form ADV의 Part 1(A and B)은 규제를 위한 정보로 신청자는 과거의 제재내역, 제공 서비스의 종류, 기타 사업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결산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적어도 1년에 한번 갱신해야 하며, 제재 조치나 제공 서비스의 변경, 연락처 변경 시에도 갱신해야 함

○ Part 2는 Part 2A와 Part 2B 두 부분으로 나뉨

- Part 2A는 고객에게 1년에 한 번씩 제공해야 하는 공시서류를 포함하며, Part 2B는 자문인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주 감독당국 등록

○ 관리자산이 2,500만 달러 미만인 투자자문업자는 SEC 등록이 금지(Advisers Act Section 203A)되며, 이 경우 주 감독당국에 등록

- 2011년 7월 21일, 도드-프랭크법에서 한도를 1억 달러로 상향 조정
- 도드-프랭크법에서 투자자문업자의 감시, 감독권자로 주 감독당국으로 명시(Section 203A)

○ 일임여부, 고객자산 수탁여부에 따라 최소순자산을 1만 달러~3만 5천 달러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주도 있음(NASAA Model Rule USA 2002 411(a)-1)

❑ IAR(Investment Adviser Representative)에 대한 주 감독당국의 규제

○ 주 감독당국은 IAR의 등록, 인가, 자격요건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음

○ IAR은 주 감독당국에 Form U4을 제출하고, 등록수수료(fee) 납입

○ 대부분의 주는 투자자문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동일한 자격요건을 IAR에게도 요구

다. 투자자문업자 자격 요건

❑ 자격시험

○ 투자자문업자(IA) 또는 IAR(Investment Adviser Representative)는 Series65 시험에 합격하고 SEC 또는 주 감독당국에 RIA(Registered Investment Adviser)로 등록해야 함

○ 브로커-딜러의 경우, 뮤추얼 펀드는 Series 6 시험, 증권은 Series 7 시험에 합격해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미국의 등록투자자문인력(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자격

○ 펀드, 투자성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 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가 제공하는 자격증, 연수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증권회사 판매인력으로 활동이 금지
-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업법(Investment Advisor Act)에 의한 투자자문업자(Investment Advisor)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 등록투자자문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북미증권업협회(North American Securities Administrators Association, NASAA)에서 주관하는 Series 65 시험(Investment Adviser Competency Exam)에 합격해야 함

- Series 65 시험에서는 투자자문과 관련된 경제학, 수학, 통계학, 투자론, 마케팅, 법, 규정, 윤리 지식을 요구하고 있음

<표 Ⅲ-2> Series 65 시험의 요구 지식

항목	문항수	비중	관련분야
경제지표 및 기업정보 (Economic Factors and Business Information)	19	14%	경제학, 수학, 통계학, 투자론
투자 상품의 특성 (Investment Vehicle Characteristics)	31	24%	투자론
고객 투자 자문 (Client Investment Recommendations and Strategies)	40	31%	마케팅, 투자론
관련 법률, 규정, 가이드라인 등 (Laws, Regulations, and Guidelines, including Prohibition on Unethical Business Practices)	40	31%	법, 규정, 윤리

자료: NASAA.org

○ 그러나, Series 65 시험 이외에도 대체적인 자격 요건이 가능함(NASAA Model Rule USA 2002 412(e)-1)

- Series 7 시험(NASD General Securities Representative Examination)과 Series 66 시험(NASAA Uniform Combined State Law Examination)
- 다음의 자격 인증 중 하나를 취득한 경우
  - Certified Financial Planner, CFP
  - Chartered Financial Analyst, CFA
  - Chartered Financial Consultant, ChFC
  - Personal Financial Specialist, PFS
  - Chartered Investment Counselor, CIC

○ College for Financial Planning의 재무설계산업에 대한 2009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금융자문업자는 다양한 자격과 인증을 보유하고 있음

○ 계속교육요건(Continuing Education Requirement)에 의해 자격 취득 후에도 소정의 교육과정이 요구됨

〈표 Ⅲ-3〉 금융자문업자의 자격시험과 인증시험

종류	설명	비율
CFP	Certified Financial Planner	89.0%
FINRA Series 7	General Securities Representative Exam	75.6%
Insurance license		71.8%
FINRA Series 65	Uniform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Law Exam	60.6%
FINRA Series 6	Investment Company and Variable Contracts Exam	29.7%
FINRA Principal license	General Securities Principal Exam	27.4%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15.2%
ChFC	Chartered Financial Consultant	9.5%
CLU	Chartered Life Underwriter	8.5%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7.5%
CIMA	Chartered Institute of Management Accountants	1.7%
CFA	Chartered Financial Analyst	1.5%
JD	Juris Doctor	1.5%
CIMC	Chartered Institute of Management Consultants	0.5%
기타		21.7%

자료: College for Financial Planning(2009)

다. Series 65 시험과 CFP

❑ Series 65 시험

○ Uniform Investment Adviser Law Examination으로 알려진 Series 65는 미국에서 투자자문업자로 활동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자격시험을 말함

○ 관련 법률, 규제 환경, 윤리뿐만 아니라 퇴직설계, 포트폴리오 관리, 신의성실의무 등 투자자문과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음

○ NASAA에서 주관하며 FINRA의 관리를 받음

❑ Series 65 시험 출제 내용

출제 영역		문항수	비중
1. 경제지표 및 기업정보(Economic factors and business information)		19	14%
A. 기본 경제 개념 (Basic economic concept)	경기 순환 주기(business cycles) 통화 및 재정 정책(monetary and fiscal policy) 미국 통화 가치평가(US dollar valuation)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inflation/deflation) 이자율과 수익률곡선(interest rate and yield curve) 경제지표(economic indicators)	6	
B. 재무 보고 (Financial reporting)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 재무비율(financial ratios) SEC 보고 내용(corporate SEC filings) 연차보고서 및 투자설명서(annual reports and prospectuses)	5	
C. 정량적인 분석법 (Quantitative methods)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 기술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 가치평가 비율(valuation ratios)	3	
D. 리스크 종류 (Types of risk)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 비체계적 위험(unsystemic risk)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자본구조(capital structure including liquidation priority)	5	
2. 투자 상품 특성(Investment vehicle characteristics)		31	24%
A. 현금 및 현금등가물의 종류 및 특성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ash and cash equivalents)	부보예금(insured deposits; 요구불예금, CD 등) 단기금융상품(money market instruments; CP, 재정증권 등)	3	
B. 고정이자증권의 종류 및 특성(Types and characteristics of fixed income securities)	미국 연방정부 및 연방기관 발행 증권(U.S. government and agency securities) 회사채(corporate bonds) 지방채(municipal bonds) 외국채(foreign bonds)	5	
C. 가치평가 방법 (Methods used to determine the value	고정 수익 가치평가 요소(fixed income valuation factors; 할증, 할인, 듀레이션, 만기 등) 할인현금흐름(discounted cash flow)	3	

of fixed income securities)			
D. 주식의 종류 및 특성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equity securities)	지분권(equity interests) 제한부 주식(restricted stock) 해외주식(foreign stocks) 주식매수선택권(employee stock options) 주주 권리(shareholder rights)	5	
E. 주식 가치평가 (Methods used to determine the value of equity securities)	기본적 분석(fundamental analysis)	2	
F. 간접투자상품 종류 및 특성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pooled investments)	개방형 뮤추얼펀드(open-end investment companies) 폐쇄형 뮤추얼펀드(closed-end investment companies) 투자신탁(unit investment trusts)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s)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4	
G. 간접투자상품 가치평가 (Methods used to determine the value of pooled investments)	순자산가치(net asset value) 할인/할증(discount/premium)	2	
H. 파생상품 종류 및 특성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derivative securities)	옵션(options) 선물(futures) 선도(forward contracts)	1	
I. 대체투자상품 (Alternative Investments)	헤지펀드(hedge funds)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s)	2	
J. 보험상품 (Insurance-based products)	변액연금(variable annuities) 정액연금(fixed annuities) 지수연동형 연금(equity indexed annuities) 생명보험(life insurance)	4	
3. 고객 투자 자문(Client investment recommendations and strategies)		40	31%
A. 고객 종류 (Type of client)	개인 및 개인기업(individual, sole proprietorship) 법인(business entities) 신탁(trusts & estates)	4	
B. 고객 특성 (Client profile)	재무 목표 및 전략(financial goals and strategies) 현재 재무 상태(current financial status) 위험 수용성(risk tolerance) 비재무적인 투자 고려 요인(non-financial investment considerations)	4	
C. 자본시장이론 (Capital market theory)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 포트폴리오 이론(Modern portfolio theory)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	3	
D.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 (Portfolio management styles and strategies)	전략적 자산배분(strategic asset allocation) 전술적 자산배분(tactical asset allocation) 능동적/수동적 투자전략(active vs. passive) 성장주/가치주 투자전략(growth vs. value) 수익 및 자본이득(income vs. capital appreciation)	5	
E. 포트폴리오 관리 기술 (Portfolio management techniques)	분산투자(diversification) 로테이팅(sector rotating) 애버리징(averaging)	3	
F. 세금 고려 (Tax considerations)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 fundamentals) 대체최저세(alternative minimum tax) 법인, 신탁, 토지 소득세(corporate, trust, and estate income tax fundamentals) 상속세, 증여세(estate and gift tax fundamentals)	4	

G. 은퇴 설계 (Retirement plans)	개인퇴직계정(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적격은퇴계획(qualified retirement plans) 비적격은퇴계획(nonqualified retirement plans)	3	
H. 퇴직연금 관련 이슈 (ERISA issues)	신탁 이슈(fiduciary issues) 투자계획서(investment policy statement) 거래 제한(prohibited transactions)	3	
I. 특별 계좌 (Special types of accounts)	교육 관련(education-related) UTMA/UGMA 계좌 소유 옵션(account ownership options)	3	
J. 단기매매증권 (Trading securities)	용어(terminology) 역할(role of broker-dealers, specialists, market-makers) 거래시장(exchanges and markets) 거래비용(costs of trading securities)	5	
K. 성과 평가 (Performance measures)	수익률(returns, yield) 벤치마크(benchmark portfolios)	3	
4. 관련 법률, 규정, 가이드라인 등(Laws, regulations, and guidelines, including prohibition on unethical business practices)		40	31%
A. 주/연방정부 관련 법률 및 규정 (State and federal securities acts and related rules and regulations)	투자자문업자 관련 규정(regulation of investment advisers, including state-registered and federal covered advisers) 투자자문업자 대리인 관련 규정(regulation of investment adviser representatives) 브로커-딜러 관련 규정(regulation of broker-dealers) 브로커-딜러 에이전트 관련 규정(regulation of agents of broker-dealers) 증권 및 발행 관련 규정(regulations of securities and issuers) 관리 규정(Remedie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24	
B. 윤리, 신의성실의무 (Ethical practices and fiduciary obligations)	대화(communications with clients and prospects) 보상(compensation) 고객 자금 및 증권(client funds and securities) 이해상충 및 기타 신의성실의무 관련(conflicts of interest and other fiduciary issues)	16	

자료: NASAA.org

❑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란?

○ FPSB(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에서 주관하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를 말함. 약자로 CFP라고도 부름

○ Financial Planning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미국 CFP Board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윤리(ethics), 교육(education), 경험(experience), 시험(examination)의 4가지 기본적인 자격인증요건(4E's)을 충족하는 전문 인재를 선발하여 고객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

○ 다음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과정이 면제됨

- 공인회계사
- CFA(Chartered financial analyst)
- 변호사

- 세무사
- 경영학/경제학/재무설계학 박사

❑ CFP 시험 출제 내용 및 범위

❍ Eight Principal Knowledge Topic Categories

- Professional Conduct and Regulation (7%)
- General Principles of Financial Planning (17%)
- Education Planning (6%)
-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Planning (12%)
- Investment Planning (17%)
- Tax Planning (12%)
- Retirement Savings and Income Planning (17%)
- Estate Planning (12%)

❍ Eight Major Domains

- Establishing and Defining the Client-Planner Relationship
- Gathering Information Necessary to Fulfill the Engagement
-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Client's Current Financial Status
- Developing the Recommendation(s)
- Communicating the Recommendation(s)
-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 Monitoring the Recommendation(s)
- Practicing within Professional and Regulatory Standards

	Foundation Level[15]	Level 1	Level 2	
Duration	3 hours	3 hours	3 hours	
Number of multiple-choice examination questions (MCQs)	90 – 100 MCQs	75 – 85 MCQs	65 – 75 MCQs (about 40% are standalone MCQs and about 60% are case-related questions based on 2 to 3 cases)	
Distribution of examination question by subject areas:				
Subject Area	Percentage (%) in Examination	Percentage (%) in Examination	Standalone MCQs	Case-related MCQs
A. Financial Planning Principles	27%	--	18%	60% (Integrated topics of financial planning)
B. Financial Management	23%	--	10%	
C. Retirement Planning	10%	--	12%	
D. Investment Planning/Asset Management	20%	31%	--	
E. Insurance Planning/Risk Management	20%	31%	--	
F. Tax Planning	---	20%	--	
G. Estate Planning	---	18%	--	
	100%	**100%**	**100%**	

<그림 Ⅲ-1> CFP 레벨별 출제 문항 분포

자료: CFP Examination Handbook, IFPHK

2. 영국

가. 투자자문시장 특성

1) 자산관리시장

❑ 은행, 증권사,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등 다양한 유형의 플레이어들이 차별화된 사업모델(고객군·서비스)로 자산관리시장에서 경쟁함

○ 주로 은행 PB, 패밀리오피스 등은 부유층·초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며, 대중부유층에 대해서는 IFA의 경우 자문 기반 중개, 증권사와 온라인플랫폼은 단순중개에 초점을 두고 공략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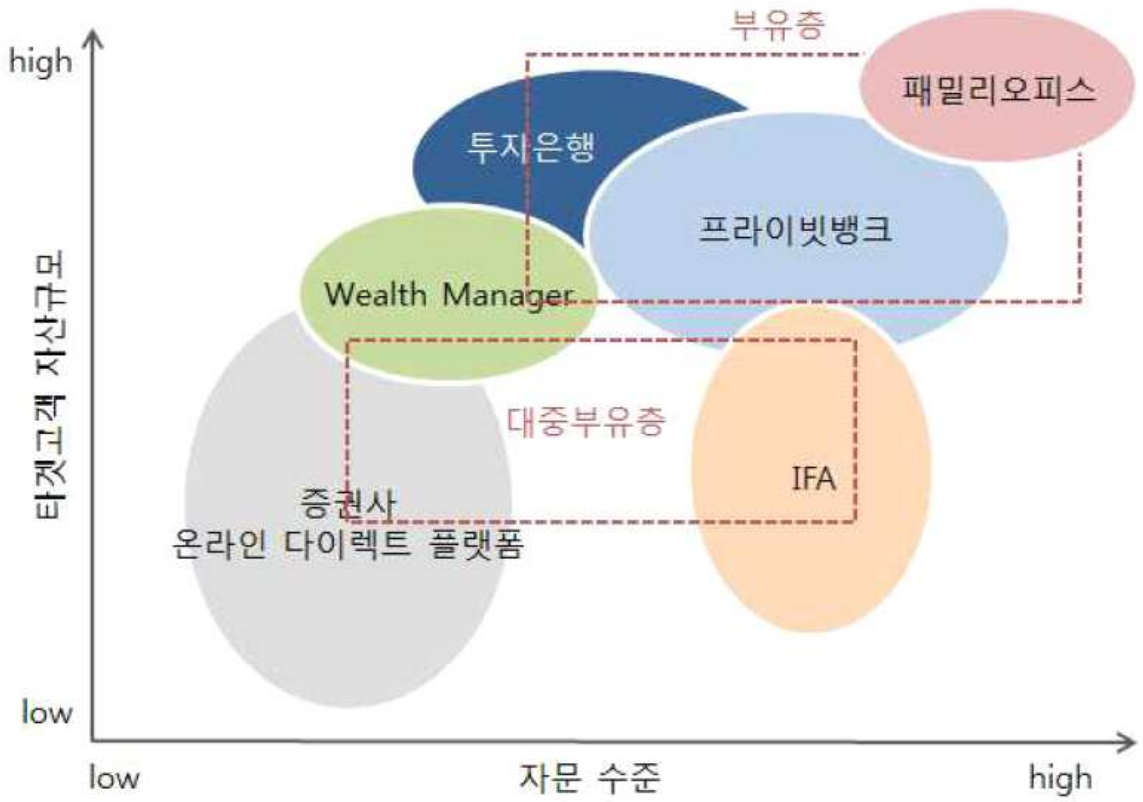

〈그림 Ⅲ-2〉 영국 자산관리시장의 경쟁구도

자료: Verdict Financial

〈표 Ⅲ－4〉 영국 자산관리시장의 주요 플레이어

플레이어 유형	대표 회사	타겟고객군	주요 서비스
Private Bank (금융그룹 사업부문)	Barclays, HSBC, Lloyds, RBS 등	부유층	자문, 일임, 브로커리지
Private Bank (standalone)	C.Hoare&Co 등	부유층	자문, 일임
Wealth Manager	St.James's Place, Brewin Dolphin, Cazenove Capital Management 등	대중부유층, 부유층	자문, 일임, 브로커리지
증권회사	Fidelity, Hargreaves Lansdown 등	대중부유층	브로커리지
패밀리오피스	Bessemer Trust, Sandaire 등	초부유층	일임
IFA	Equilibrium Asset Management, Towry 등	대중부유층	자문
투자은행	Goldman Sachs, JP Morgan 등	부유층, 초부유층	자문, 일임, 브로커리지
온라인D2C(direct to client) 플랫폼	Nutmeg, rplan, The Share Centre 등	대중, 대중부유층	일임, 브로커리지

자료: Verdict Financial

2) 투자자문업

❑ (유형) 취급상품의 범위와 전속 여부에 따라 독립자문업자(IFA)와 한정자문업자(restricted advisers)로 구분되며, 인가 자격요건 등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됨

○ (독립자문업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모든 유형의 소매 투자상품(all types of retail investment products), 모든 상품공급업자(all firms across the market)의 상품을 대상으로 편향되거나 한정되지 않은 자문을 수행하는 자 또는 회사

○ (한정자문업자) 특정 상품(군) 또는 특정 상품제공업자의 상품만을 대상으로 자문서비스를 수행하는 자 또는 회사로서, '독립적인(independent)'라는 표현 사용이 금지됨

❑ (법적 지위) 자문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직접 인가를 받은(authorized) 인가업자(principal firms)와, 인가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해 인가업자의 인가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지정대리인(appointed representative, AR)으로 구분함

○ 지정대리인(AR)은 감독당국의 규제감독을 받지 않으며, 지정대리인의 모든 법적 책임은 인가업자(principal)가 부담

- 독립자문업권 내에서의 인가업자는 'IFA network'로 불림

나. 투자자문업자 자격요건

❑ (IFA 인가 요건)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FCA로부터 인가를 취득함

- 투자자문업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RDR 시행 이전 자격요건(QCF 레벨3, 자기자본 1만 파운드) 대비 상향조정됨

○ (전문 역량) 투자자문업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자격학점제 기준 최저 QCF 레벨 4 자격을 취득해야 함

- QCF(Qualification and Credit Framework): 국가자격학점제도로서 등록단계부터 레벨 8까지 총 9단계로 구성됨. 이 중 레벨 4는 학사 1년 수료에 해당함

○ (재무 요건)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2만 파운드 또는 투자사업(investment business)으로 창출되는 연소득의 5% 중 큰 금액

- 2017.6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중간단계로서 2016.6월까지 15,000 파운드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함
- 다만, IFA network(principal)이거나 고객자산을 수탁(holding client money)하는 경우 관련 소득의 10% 금액을 적용함

❑ 영국의 금융자문인력(Financial Adviser) 자격

○ FSP(Financial Skills Partnership)에서 금융관련 자격제도를 관리하고 있음

- 영국의 전 금융업계(은행, 주택금융조합, 보험, 보험중개인, IFA, 증권, 투자관리, 신용 및 리스, 연금 등)를 대표하는 금융업자 및 FSA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금융관련 자격을 결정하고 있음
- 여러 교육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인증하고, 인증프로그램을 수료 후 소정의 시험에 통과하면 자격이 주어짐

○ 금융자문인력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QCT(Qualification and Credit Test) 레벨 4나 SCQF(Scottish Credit and Qualification Framework) 레벨 8을 요구함

○ QCT 레벨 4에서 요구되는 지식은 다음과 같음

- 금융서비스 규제와 윤리
- 투자원칙과 위험
- 개인세금
- 연금 및 노후설계
- 보장성 상품
- 재무설계 실무

○ 자격 취득 후에는 매년 3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에 참여해야 함

<표 Ⅲ-5> 영국 QCT 레벨 4 인증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기관
Diploma in Regulated Financial Planning	Chartered Insurance Institute (CII)
Diploma in Investment Planning	Chartered Banker Institute
Diploma for Financial Advisers	ifs School of Finance
Investment Advice Diploma	Chartered Institute for Securities & Investment (CISI)
Diploma in Professional Financial Advice	SQA/Calibrand

자료: FSP(Financial Skills Partnership) homepage

❑ QCF(Qualification and Credit Framework)란?

○ 자격체계(qualification process)는,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 process)를 따르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29개(이후 비유럽 국가를 포함하여 48개국으로 늘어남) 유럽 국가들이 각 나라의 고등교육제도(즉, 대학교육) 사이의 비교가능성을 담보하는 교육 수준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1999년에 도입한 제도

- 2010년 완성을 목표로 처음 이탈리아의 볼로냐에서 각 나라의 교육부 장관급이 모여서 서명 (볼로냐 선언)

○ 영국에서 자격체계(qualification framework)의 아이디어는 1997년에 가장 먼저 제안되었고(1999년 볼로냐 선언으로 이어짐), 그 뒤 2008년까지는 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QCF (Qualification and Credit Framework)가 쓰이다가 지금은 RQF(Regulated Quality Framework)로 대체

❑ QCF 프로세스

○ QCF 시스템은 크레딧(credit)과 레벨(Entry 레벨부터 레벨 8까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의 크레딧은 대략 교육 10시간에 해당

- Awards (1~12 credits; 10~120 hours of learning)
- Certificates (13~36 credits; 130~360 hours of learning)
- Diplomas (37 credits 이상; more than 370 hours of learning)

❑ QCF vs. CFA/CFP

○ CFA는 QCF 레벨 7에 해당하며, 이는 재무학(finance)의 석사 학위 취득에 해당함. 영국 NARIC(National Recognition Information Centre)은 CFA 레벨 1, 2, 3을 각각 QCF 레벨 5, 6, 7에 해당한다고 인정함

- 영국 NARIC은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해외에서 영국으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의 자격을 평가하고 이를 영국 자격으로 환산하여 이미 취득한 자격의 상호호환성을 인정해주는 정부 인증기관을 말함

○ 영국 보험연수원(CII: Chartered insurance institute)에서 제공하는 "advanced diploma in financial planning"과 IFP(institute of financial planning)의 CFP program은 QCF 레벨 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인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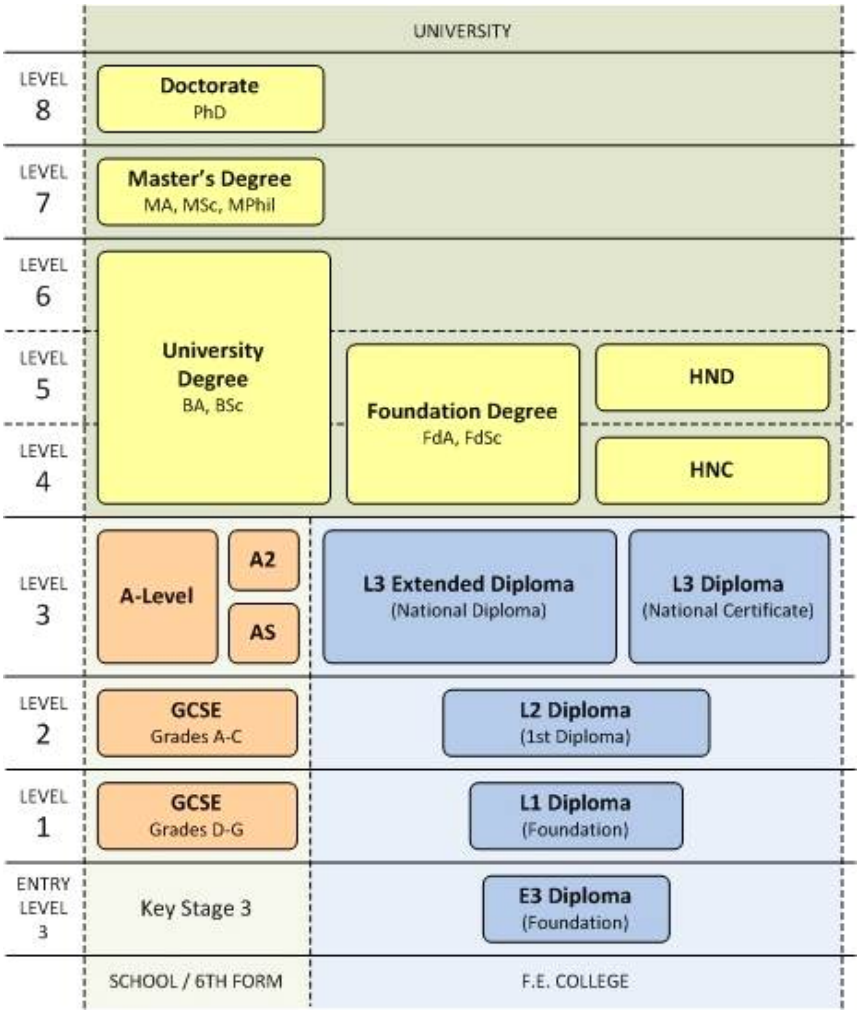

〈그림 Ⅲ-3〉 QCF 레벨 프레임워크

자료: Accredited Qualifications

<표 Ⅲ-6> RQF 레벨 프레임워크

RQF level	Level criteria 레벨내용	Example qualifications 이 자격조건의 예시	Equivalent FHEQ qualifications 잘 알려진 이 조건의 내용
level 8	고차원적인 연구 가능	Level 8 Award Level 8 Certificate Level 8 Diploma	PhD/DPhil Professional doctorates (박사 학위)
level 7	고등수준의 기술과 실제적으로 적용가능한 지식 습득, 적용	Level 7 Award Level 7 Certificate Level 7 Diploma Level 7 NVQ	Master's degree (석사 학위) Integrated master's degree Primary qualifications (first degrees) in medicine, dentistry and veterinary science PGCE/PGDip/PGCert
level 6	특정 주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술과 지식 습득	Level 6 Award Level 6 Certificate Level 6 Diploma Level 6 NVQ Degree Apprenticeship	Bachelor's degree (학부 학위) Graduate Certificate Graduate Diploma Professional Graduate Certificate in Education
level 5	특정 주제에 대한 기초적인 수준의 기술과 지식 습득	Higher National Diploma Level 5 Award Level 5 Certificate Level 5 Diploma Level 5 NVQ Level 5 Higher Apprenticeship	Foundation degree (파운데이션 학위) Diploma of Higher Education Higher National Diploma (awarded by a degree-awarding body)
level 4	습관적이지 않은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	Higher National Certificate Level 4 Award Level 4 Certificate Level 4 Diploma Level 4 NVQ Level 4 Higher Apprenticeship	Certificate of Higher Education Higher National Certificate (awarded by a degree-awarding body)
level 3	문제해결능력이 있고 복잡한 직무범위의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A Level (고등학교 수료) Access to Higher Education Diploma AS Level Applied General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T Level Level 3 Award Level 3 Certificate Level 3 Diploma Level 3 NVQ Level 3 ESOL Level 3 National Certificate Level 3 National Diploma Music grades 6, 7 and 8 Advanced Apprenticeship Welsh Bacc Advanced	
level 2	사실관계를 잘 알고 직무범위의 일들을 따라갈 수 있는 수준	GCSE grades A* - C (중학교 3과목 C 이상으로 이수) Reformed GCSE grades 4 - 9 CSE grade 1 Level 2 Award	

		Level 2 Certificate Level 2 Diploma Level 2 NVQ Level 2 ESOL Level 2 Essential Skills Level 2 Functional Skills Level 2 National Certificate Level 2 National Diploma Music grades 4 and 5 Welsh Bacc National Intermediate Apprenticeship	
level 1	사실관계를 아는 수준	First Certificate GCSE grades D – G Reformed GCSE grades 1 – 3 Level 1 Award Level 1 Certificate Level 1 Diploma Level 1 NVQ Level 2 ESOL Level 2 Essential Skills Level 2 Functional Skills Music grades 1, 2 and 3 Welsh Bacc Foundation	
Entry	정상적인 인간	Entry Level Award Entry Level Certificate Entry Level Diploma Entry Level ESOL Entry Level Essential Skills Entry Level Functional Skills Skills for Life	

자료: www.gov.uk

3. 호주

가. 금융자문인력 자격요건

❑ 자문업무 및 자문업자 정의

○ 호주 회사법(Corporation Act)은 금융자문행위를 개인의 특정금융상품에 대한 결정이나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지니거나 판단되는 개인적 추천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혹은 보고서로 정의

○ 자문업자는 선관의무, 이해상충방지 보수 의무 등의 영업행위 규율에 적용받는 사람으로 정의(Div 2 of Pt 7.7A of Corporation Act)

❑ 호주의 금융자문인력 자격

○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에서 AFSL(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ce) 자격을 부여

○ Regulation Guideline 146에서 보험상품, 소비자신용보험, 은행예금 등의 1종 상품과 이외의 상품인 2종 상품으로 분류하고, 각 종류 상품을 취급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자격요건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음

○ Regulation Guideline 146에서 금융자문인력의 자질로 지식요건(Knowledge Requirement)와 기술요건(Skill Requirement)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지식요건: 금융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식으로 일반지식(Generic Knowledge)과 전문지식(Specialist Knowledge)로 구분
- 일반지식: 1종 금융상품을 자문하는데 요구되는 지식으로 경제환경, 금융시장, 금융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 전문지식: 특정 금융상품을 자문하는데 요구되는 분야별 지식, 즉 재무설계, 증권, 파생상품, 자산운용, 연금(Superannuation), 보험, 예금, 외환, 주택저축, 신용증거금대출, 공해배출권

○ Regulation Guideline 146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을 심사하여 다수의 교육기관을 공인 교육기관으로 지정

- ASIC 교육기관 웹페이지에서 “1종, 재무설계”를 검색어로 하면 147개 교육과정이 검색되며, “2종”을 검색어로 하면 85개의 교육과정이 검색
- 교육기관으로는 사설학원, 금융기관, 대학교 등이 있으며, 교육방식으로는 원격, 대면, 다습, 웹, 컴퓨터, 실습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

○ 외국 규제기관(영국 FSA, 뉴질랜드 FMA, 미국 FINRA, 홍콩 FSC, 싱가폴 MAS 등)에서 인정하고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 계속훈련요건(Continuing Training Requirements)에 의해 자격 취득 후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매년 이수해야 함

〈표 Ⅲ-7〉 호주 ASIC의 교육과정 예시

과정명	교육기관	교육방식
검색어: 1종, 재무설계, 검색결과: 147개		
Diploma of Financial Planning	Australian College of Professionals	원격,대면
DPE Financial Planning	Pinnacle Financial Services Academy Pty Ltd	원격,대면,자습
FP501 Financial Planning Compliance (FNS10)	Australian and New Zealand Institute of Insurance and Finance	원격,자습
Bachelor of Commerce (Financial Planning Major)	Deakin University- Faculty of Business & Law	원격,대면,웹,컴퓨터
Master of Applied Finance	Charles Sturt University, Faculty of Business	원격,웹,컴퓨터,자습
Graduate Certificate in Financial Planning	University of the Sunshine Coast	원격,웹
검색어: 2종, 검색결과: 85개		
Certificate III in Financial Services	Institute of Strategic Management	원격,대면,자습
AFSL Tier 2 Accreditation (FNS10)	GWM Adviser Services Ltd T/A Advice Education	원격,자습,웹,실습, 컴퓨터
Heritage Bank Tier 2 In-house Training Course	Heritage Bank T/A	컴퓨터,사례,실습,대면
Diploma of Financial Services (Banking) FNS51204	TAFE NSW - South Western Sydney Institute	컴퓨터,자습,웹,대면

자료: http://www.asic.gov.au/eTraining/eTrain.nsf

❑ 인가 및 등록

○ 금융자문을 하는 모든 개인과 법인은 Registered Financial Service Provider로 등록해야 함

○ Registered Financial Service Provider의 이사, 직원은 National Certificate in Financial Services (Financial Advice; Level 5)를 취득해야 함

○ The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NZQA)와 ETITO(Electrotechnology Industry Training Organisation)가 공동으로 자격요건을 관장하고 있으며, 자격시험 및 등록은 ETITO가 관리하고 있음

○ 자격요건은 공인 기관에서 제공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시험에 통과하면 됨

- 필수과목은 규제와 행위준칙, 금융자문과 상품, 경제와 금융시장, 금융자문 실무이며, 선택과목은 투자자문, 보험자문, 부동산상품자문임

○ ETITO가 대학교, 민간기관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심사하여 공인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있음

- 대학교: University of Auckland Business School, Massey University
- 2년제 대학교: The Open Polytechnic of New Zealand, Southern Institute of Technology, UNITEC New Zealand, Waikato Institute of Technology, Wellington Institute of Technology
- 민간기관: Australian and New Zealand Institute of Insurance and Finance, IBANZ College, Strategi Institute Limited

나. 금융자문업자 윤리강령 강화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2018.5.15일 금융자문업자 윤리준수계획(Compliance schemes for financial advisers)(안) (consultation paper)을 발표함

○ 윤리준수계획은 '모니터링 기관(monitoring bodies)이 금융자문 제공자(relevant provider)가 윤리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계획'으로 ASIC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호주에서는 몇 년 전부터 금융자문업자의 직업적·윤리적·교육적 기준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호주 정부가 2016년 금융자문업자에 직업 기준(professional standards)을 도입하는 회사법 개정안(Corporations Amendment (Professional Standards Financial Advisers) Act 2017)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직업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금융자문업자는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직업 교육을 받아야 함
- 금융자문업자는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따라야 하며 준수계획(Compliance scheme)에 가입해야 함
- 금융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금융자문업자(financial adviser)'나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금융자문업자 윤리강령은 '금융자문업자 기준 및 윤리감독국'(FASEA, Financial Adviser Standards and Ethics Authority)이 담당하며 2020.1.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금융자문과 재무설계의 구분) 호주에서는 금융자문업자와 재무설계사의 기능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측면이 있고, "Financial planner"라는 용어를 금융자문업자와 동일하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음

○ 2013년부터 재무설계사의 용어 사용을 규제하려는 계획안들이 제시되어 왔음

- 대부분의 재무설계사가 자문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Financial planner의 용어를 규제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

○ 소매금융투자상품에 집중하여 기술한 영국 법과 달리 호주 법은 자문행위의 대상인 금융상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기에, 보다 일반적인 개념인 재무설계와 금융자문행위의 구분이 불분명함

다. 금융자문업자 자격요건 강화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2018.11.8일 금융자문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안을 발표함

❑ 호주 회사법(Corporation Act)은 금융서비스 인가를 받은 사람(AFS licensee)들이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일명 '조직 자격요건 의무'(Organizational competence obligation)라고 하며 기존 '규제 지침(RG, Regulatory Guidance) 105'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음

- 조직 자격요건 의무를 갖춘 사람들을 '책임 관리자'(responsible manager)라고 칭함

○ 금융자문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옵션 2 ~ 옵션 5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함

〈표 Ⅲ-8〉 책임자로서의 지식과 능력 요건

구분	지식요건	능력요건
옵션1	관련 업계 기준이나 호주건전성규제위원회(APRA)에 의해 정해진 기준을 충족	최근 5년 내 관련 경력 3년 이상
옵션2	관련 내용에 대해 대학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공인 평가관이 평가	최근 8년 내 관련 경력 5년 이상
옵션3	관련 분야 학사를 보유하고 단기업계과정(short industry course)을 수료	최근 5년 내 관련 경력 3년 이상
옵션4	학사와 동등한 수준의 관련 분야 자격증 보유	최근 5년 내 관련 경력 3년 이상
옵션5	옵션 1~4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적합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자료: 한국투자자보호재단(2018)

❑ FCA는 규제지침 146을 통해 자문업자의 최소 교육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ASIC의 교육 등록(training register)을 받거나 공인평가관(authorized assessor)에게 교육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승인받으면 됨(경력자의 경우 공인평가관에게 평가)

○ 자문 가능한 상품에 따라 적용되는 교육기준이 상이함

- '1등급'으로 불리는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diploma level'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관련 능력 요건을 충족해야 함
- 1등급 금융상품에 대한 범용자문(general advice)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diploma level의 교육과정을 수료하되 관련 능력 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됨
- 2등급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Certificate III level'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관련 능력 요건을 충족해야 함
- 2등급 금융상품에 대한 범용자문만 제공하는 경우 Certificate III level' 교육과정을 수료하되 관련 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표 Ⅲ-9〉 책임자가 지식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해야 하는 일

구분	내용
옵션2	공인평가관에게 규제지침 146의 diploma level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 받기
옵션3	관련 분야 학사를 보유하고 규제지침 145의 Certificate III level 교육과정을 수료하기
옵션4	규제지침 146의 diploma level 교육과정을 수료하기

자료: 한국투자자보호재단(2018)

❑ 기존 금융자문업 인가자들의 조직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교육 및 훈련기준을 만족하는 한 명 이상의 책임자가 자문상담사(adviser)들을 감독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이를 위해 책임자 요건에 교육 및 훈련 자격요건인 '옵션6'을 새로 추가하기로 함

○ 책임자는 금융자문업자 시험(financial adviser exam)을 통과하고 학사 학위 이상과 매년 자격 갱신(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함

- 현재 책임자인 사람들과 새로 책임자에 지원할 사람들 모두 2021년까지 금융자문업자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현재 책임자인 사람들은 2024년까지 학위 기준을 통과해야 함

○ 2020.1월부터 적용되는 FASEA의 금융자문업자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준수해야 하며 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준수제도(compliance scheme)를 적용 받음

〈표 Ⅲ-10〉 현재 자문업 인가자 자격등급에 따른 학위 취득과정

현재 자격등급	과정	세부사항
학위 없음	수료(diploma), 학사(degree), 석사(masters)	8가지 과정(회사법, FASEA의 윤리강령 관련 교육과정, 행태경제학 등)
연관 없는 학사 학위	수료	8가지 과정(회사법, FASEA의 윤리강령 관련 교육과정, 행태경제학 등)
연관된 학사 학위	예비과정(Bridging course)	3가지 과정(회사법, FASEA의 윤리강령 관련 교육과정, 행태경제학)
연관된 학사 학위 + 연관된 졸업 후 자격증	단일과정(Single subject)	FASEA의 윤리강령 관련 교육과정
재무설계교육위원회(FPEC) 인증 자격증	단일과정(Single subject)	FASEA의 윤리강령 관련 교육과정

자료: 한국투자자보호재단(2018)

❑ ASIC은 2018년 12월 6일까지 강화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2019년 3월 강화된 규제지침을 발표함

4. 일본

가. 일본의 자격제도의 체계

❑ 관리주체에 따라 국가자격, 공적자격, 민간자격으로 구분함

❑ 국가자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거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업무분야에 국한하여 국가만이 그 자격을 부여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 국가자격은 법률을 근거로 국가가 개인의 능력, 지식, 기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해 부여하는 자격으로 주로 국가의 안전, 생명, 질서와 관련된 면허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의사, 기능사,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원, 건축사, 사법, 경찰, 변호사, 방위, 소방, 세무사, 행정서사, 공인회계사 종목이 해당함
- ❍ 국가자격은 운영방식에 따라 일본 성・청(省廳)의 개별 법령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국가자격과 기능사를 중심으로 후생노동성에서 시행하고 관리하는 기능검정 제도, 문부과학성에서 관리하는 기술사제도가 있음.
- ❍ (개별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 일본 성・청(省廳)의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임
  - 주로 국가의 안전, 생명, 질서와 관련한 면허적 성격을 가지며,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간호사, 항공종사자, 보육사, 조리사, 제과위생사, 클리닝사 등이 있음
- ❍ (기능검정제도에 따른 기능자격) 일하면서 습득하거나 또는 필요로 하는 기능의 습득 수준을 평가하는 국가검정제도로서, 후생노동성에서 주관하고 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가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음
  - 기계가공, 건축목공, 재무설계 등 총 130개 직종이 있으며(2018년 기준), 합격자는 ‘기능사(技能士)’로 지칭됨
  - 총 130개 자격 직종 중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직업능력개발협회가 실시하는 직종 (특급/1급/2급/3급 또는 단일 등급)은 원예장식, 조경, 금속용해, 주조 등 111개이며, 민간지정시험기관 (일본FP협회, 금융재정사정연구회, 인터넷스킬인정보급협회, 커리어컨설팅협의회 등)이 실시하는 직종 (특급/1급/2급/3급 또는 단일 등급)은 재무설계, 금융서비스, 웹디자인, 커리어컨설팅, 피아노조율, 기계보전 등 19개임

○ (기술사 제도, Professional Engineer) 기술사 제도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 기술과 고등응용 능력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공익을 보장하기 위해 높은 기술자 윤리를 갖춘 우수한 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에 의한 자격 인정 제도로서, 기술사제도는 문부과학성에서 운영하고 있고, 검정업무는 일본기술사회에서 위탁받아 시행함

- 일본 기술사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국가시험 (기술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기술사라는 명칭을 부여함
- 기술사보(Associate Professional Engineer, 수습기술사) 제도가 있는데, 일본기술사법에 근거한 국가자격으로서, 유자격자는 기술사의 지도하에 기술사보의 칭호를 사용하여 기술사를 보좌하는 기술 업무를 수행하며, 기술사 제1차 시험합격자 또는 그와 동등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임. 기술사보 응시자격에 연령 · 학력 · 업무경험 등의 제한은 없지만, 응시과목의 수준은 4년제 대학과정 정도임

○ 국가자격을 효력에 따라 구분하면 업무독점자격, 의무배치자격, 명칭독점자격이 있음

- (업무독점 자격) 기본적으로 생명의 안전 확보에 직결되는 것으로, 해당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일정한 업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임. 총 111종이 있으며 (2016년 기준) 대표적인 것으로 의사 (의사법), 변호사 (변호사법), 공인 회계사 (공인회계사법) 등이 있으며, 그 외에 교원면허, 자동차면허 등의 각종 면허가 해당함. 단, 국가자격 가운데 면허는 특정업무 또는 취업 시 필요조건이 되므로 면허취득뿐만 아니라 필히 각 지방단체가 실시하는 별도의 시험 등 채용절차를 거쳐야 함
- (의무배치자격) 업무독점자격 이외의 것으로서, 일정한 사업장에서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관리감독자로서 배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임. 고압가스 제조보안위임자, 여행업무 담당주임자 등이 있음
- (명칭독점자격) 업무독점자격과 의무배치자격 이외의 것으로, 그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일정한 명칭(호칭)을 부여받는 경우 또는 단순히 전문지식과 기능의 보유를 공증하는 경우이며, 기술사, 영양사, 정보처리기술자, 재무설계사 등이 있음

❑ 공적자격은 민간이 해당 관청의 인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격으로 사내검정 인정제도가 있음

○ (사내검정 인정제도) 근로자의 직업에 필요한 능력의 개발 및 향상,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단체 혹은 그 연합 단체가 그 사업에 관련하는 직종에 대해 해당 사업주 등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검정하고 후생노동대신이 인정하는 제도임

○ 기업 내에서 특유한 기능, 기술혁신에 따른 변화가 현저한 첨단적 기술, 라인작업, 조립작업 등의 기능 등으로 기업의 특수성이 가미되고 있기 때문에 기능검정으로써 전국적으로 실시될 수 없는 것이 대상임

○ 2018년 8월 9일 현재, 사내검정 자격으로 인정된 것은 미쓰비시자동차공업, 토요타자동차 대리점협회, 덴소, 이온 등 49개 사업주에서 자동차 부품관리, 자동차 판매 및 정비, 전장품 부착, 생선판매가공 등 131개 직종임

❑ 민간자격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정부의 관여 없이 업계 단체, 임의 단체, 학교 등이 독자적으로 실시하여 인정하는 자격제도로서,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는 자격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자격신설 및 폐지도 민간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나. 일본 자격제도의 특징[3)]

❑ 기능과 기술을 구분하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일본의 자격제도는 태평양 전쟁 후, 경제부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을 산업현장에 공급하기 위해 자격 직종 개별적으로 제도함

○ 기능검정제도는 후생노동성에서 주관하며 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에서 검정을 담당하고 있고, 기술사제도는 문부과학성에서 주관하며 일본기술사에서 검정을 담당하는 등 기능과 기술 자격이 구분됨에 따라 자격 간의 검정내용, 응시자격 등이 연계되어 있음

❑ 정부주도형으로 자격제도를 운영함

○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인정기능심사제도 폐지(2005년), 기능검정의 민간위탁 확대 등과 같이 자격제도에서 국가의 역할을 점차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은 내부 노동시장의 발달로 기업 내 훈련을 통해 인력양성을 해 왔기 때문에 민간전문단체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과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내자격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음

3) 어수봉 외 3인(2017) 참조

❑ 기존 자격제도를 보완하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단일화된 평가기준으로 직업능력평가기준을 개발하고 있으나, 기존 자격제도 및 교육훈련제도와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는 않음

❑ 일본 자격제도의 개선 및 자격의 국가 간 상호인정을 위해 응시자격이나 시험내용을 변경하면서 국제적 통용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다. 금융관련 기능검정제도

❑ 기능검정제도에 따른 국가자격 중 금융관련 자격은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와 금융창구서비스(Financial Services)의 두 개 직종만 해당됨

❑ 재무설계 기능검정은 직업 능력 개발 촉진법에 따라 2002년부터 후생노동성의 민간지정시험기관인 일본FP협회와 금융재정사정연구회에서 실시하고 있음

○ 재무설계사는 상담을 통해 고객의 자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고객의 라이프 플랜이나 요구에 맞는 저축, 투자, 보험, 세무, 부동산, 상속·사업 승계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언하는 자산 상담 관련 전문가를 말함

- 은행이나 증권 회사, 보험 회사 등에 근무하기도 하고 별도의 의 사무소를 열 수도 있음.

○ 재무설계기능사는 업무독점자격이 아니라 명칭독점자격으로 재무설계기능사가 아니더라도 재무설계를 할 수 있지만 재무설계기능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 주로 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농협, 우체국 등 예금 취급 금융기관,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증권회사, 신용회사, 부동산회사, 건설회사 등의 근무자들이 재무설계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고 별도의 사무소를 낸 독립 재무설계사들이 주로 자격을 취득하고 있음
- 재무설계기능사가 아니더라도 재무설계를 할 수 있지만 2017년의 경우 기능검정제도의 130개 직종 중 재무설계 직종에 지원한 지원자가 절대 다수인 점(784,048명의 총 지원자의 59%인 467,876명이 지원)을 고려하면 특별히 독립 재무설계사의 경우 재무설계 활동을 위해서 재무설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음

❍ 재무설계기능사는 1급, 2급, 3급의 3가지 등급이 있고 각 등급별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음

- 2급과 3급의 필기시험은 동일한 문제로 동일한 시험날짜에 실시되고 1급 필기시험은 금융재정사정연구회에서만 실시함
- 필기시험은 생활계획 및 자금계획, 위험관리, 금융자산운용, 세금기획, 부동산, 상속 및 사업승계의 6가지 분야에서 출제됨
- 실기시험은 과목과 문제가 실시기관 별로 다른데 금융재정사정연구회는 1급, 2급, 3급의 개인자산 상담업무, 2급의 중소 사업주 자산 상담업무 · 생명보험 고객자산 상담업무 · 손해보험 고객자산 상담업무, 그리고 3급 보험고객자산 상담업무 과목을 담당하고 있고 일본 FP협회는 1급, 2급, 3급의 자산 설계 제안 과목 실기시험을 실시함
-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은 시험 실시 기관인 금융재정사정연구회와 일본FP협회가 교차 인정을 하며 실기시험의 선택과목에 따라 구별되는 (합격증서에 선택과목 명이 기재됨) 기능사 자격이 부여됨
- 예를 들어 3급 개인자산상담업무 실기시험을 봐서 통과했다면 3급 재무설계기능사(개인자산상담업무) 자격증을 취득한 것임

❍ 재무설계기능사의 2급과 3급의 경우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중 어느 것을 먼저 취득해도 무방하나 1급의 경우엔 필기시험에 합격하여야 실기시험을 치룰 수 있음

❍ 재무설계기능사 3급 시험은 재무설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 응시가 가능함

-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3급 기능검정 합격자, 2년 이상의 재무설계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일본FP협회가 인정하는 공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AFP(Affiliated Financial Planner) 인증 교육을 수료 한 자, 후생 노동성 인증 금융 섭외 기술 심사 3급 합격자임
- 1급 시험의 학과시험 응시자격은 2급 기능 검정 합격자 중 1년 이상의 재무설계 실무경험을 가진 자, 5년 이상의 재무설계 실무 경험이 있는 자, 후생노동성 인증 금융 섭외 기술 심사 2급 합격자 중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자이고 실기시험 응시자격은 금융재정사정연구의 경우 1급 학과시험 합격자, 금융재정사정연구회가 실시하는 FP 양성과정 수료자 중 1년 이상의 재무설계 실무경험을 가진 자, 일본FP협회의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 인증자, 일본FP협회 CFP 자격 심사 합격자임
- 재무설계기능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른 관련 자격제도와 연계되어 있음

❑ 금융창구서비스 기능검정은 금융기관의 창구 업무 등에 필요한 기능의 정도를 검정하며 후생노동성의 민간지정시험기관인 금융재정사정연구회에서 실시, 2016년 5월부터 기능검정제도를 개정중인 것으로 파악

○ 금융창구서비스 기능사는 1급, 2급, 3급의 3가지 등급이 있고 각 등급별로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이 있음. 3급 실기시험의 경우엔 텔러업무와 금융상품 컨설팅 업무의 선택과목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시행됨

○ 금융창구서비스 기능사의 1급, 2급, 3급 모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중 어느 것을 먼저 취득해도 무방하여 각 등급별로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동시에 치룰 수 있음

○ 금융창구서비스 기능사 1급, 2급, 3급의 학과시험은 고객지원 컴플라이언스, 관련 법령·규제, 금융경제 지식·투자이론, 금융상품 지식, 상담 업무 등에 관한 지식의 5대 분야에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실기시험은 사례중심의 주관식으로 1급과 2급, 그리고 3급의 텔러 업무의 경우 고객 지원 및 정보 수집, 상품 지식·정보 기술, 법령 준수, 상담 업무 제안 기능, 고객 팔로우의 5가지 분야에서 출제됨

- 3급의 금융상품컨설팅 업무의 경우엔 투자형 금융 상품 지식, 법령 준수, 설명·제안 기능, 불만 대응력의 4가지 분야에서 출제됨.

○ 금융창구서비스 기능사 3급 시험은 금융기관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 응시가 가능함

-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2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자, 3급 기능 검정 합격자, 후생노동성 인증 텔러 기술심사 3급 합격자임
- 1급 시험의 응시자격은 4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자, 2급 기능 검정 합격자, 후생노동성 인증 텔러 기술심사 2급 합격자임
- 금융창구서비스 기능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른 관련 자격제도와 연계되어 있음

라. 일본의 AFP와 CFP 자격제도

❑ 재무설계사는 일반적으로 개개인과 가족의 라이프플랜(인생설계)을 기반으로 미래의 수지 전망을 세우고 최적의 자산 설계·자금 계획을 제안, 조언하고 그 실행을 지원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음.

❑ 일본에는 재무설계와 관련하여 국가자격인 재무설계기능사 이외에 일본FP협회에서 주관하는 AFP자격과 CFP자격이 있음

❑ AFP자격은 2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재무설계와 관련된 일본 국내의 민간자격으로 2년마다 자격 갱신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계속 향상시켜야 하는 신뢰할만한 재무설계전문가라 할 수 있음

- ○ 2018년말 기준 일본에서는 160,042명의 자격보유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 AFP자격은 국가자격인 재무설계기능사와 연계되어 있어 2급 재무설계기능사 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재무설계 기초, 금융 자산 운용 설계, 부동산 운용 설계, 라이프 플래닝 및 은퇴설계, 리스크와 보험, 세금 기획, 상속 · 사업 승계 설계, 제안서 작성을 포함하는 AFP 인증 교육을 수료하면 AFP 자격이 주어짐
- ○ AFP 인증교육 수강 시점에서 세무사회 또는 공인회계사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자는 AFP 인증교육(세무사 과정)을 수료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AFP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 AFP는 윤리서약을 요구하여 직업윤리를 특별히 강조함

❑ CFP자격은 전세계 26개국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제공인 재무설계 민간자격으로 세계 수준의 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임을 증명하는 AFP보다는 상위의 고급 자격으로 2년마다 자격갱신에 소정의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음

- ○ 2018년말 기준 일본에서는 21,669명의 자격보유자가 활동하고 있고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 CFP자격 또한 국가자격인 재무설계기능사 자격과 연계되어 있음
- ○ 일본FP협회의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 인증자나 일본FP협회 CFP 자격 심사 합격자는 재무설계기능사 1급 학과시험이 면제되고 바로 1급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짐
- ○ CFP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운용설계, 부동산운용설계, 라이프플래닝 및 은퇴설계, 리스크와 보험, 세금기획, 상속·사업승계설계의 6과목의 시험을 통과하여야 취득이 가능하고 2년마다 자격 갱신에 재무설계 실무 및 윤리와 관련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격을 유지해야 함
- ○ CFP는 시험 합격 전 10년과 시험 합격 후 5년 기간에 최소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인증에 필요하고 윤리서약을 해야 하는 고도의 재무설계 실무능력과 윤리의식을 요구

5. 싱가포르

가. 개요

❑ 싱가포르 금융소비자들은 주로 자문서비스를 통해 투자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자문업자는 크게 LFAs(Licensed Financial Advisers)와 EFAs(Exempt Financial Advisers)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 2013년 현재, 싱가포르의 LFAs는 32개사가 영업 중임 (Lee, 2013)

나. 금융자문업무 및 금융자문업자의 유형

❑ 금융자문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싱가포르 금융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의 면허를 받아야 함

○ 은행, 상업은행, 금융회사, 보험사, 보험중개인 및 기타 자본시장 관련 기업 등은 별도의 MAS 규제를 받기 때문에 금융자문업무의 면허를 면제

○ 기관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자문업을 영위하는 금융자문업자나 30명 미만 적격투자자(accredited investor) 및 자산 규모 200만 싱가포르달러(SGD) 이상을 보유한 고액투자자 대상 자문업자도 금융자문업무의 면허를 면제

❑ 싱가포르의 금융자문업자는 자문수수료(fee) 또는 판매수수료(commission)를 수취할 수 있으며, 다음에 해당할 경우 독립자문업자로 규정

○ 첫째, 금융상품 제조업자와 어떠한 금전적 혜택을 주고받지 않은 자문업자

○ 둘째, 추천 금융상품의 직간접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문업자

○ 셋째, 금융상품 제조업자로부터 기인하는 이해상충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문업자 (Financial Advisers Act, Financial Advisers Regulation, Sec. 21)

❑ LFA는 Financial Advisers Act에 의해 MAS의 규제 대상이며, EFA는 LFA와 동일한 기준으로 금융자문업무를 영위하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받음

○ 금융자문업자는 기본적으로 성실성, 객관성, 고객의 기밀 유지 및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영업

- 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의 주문에 대해 신속하고 최선의 이행의무를 포함한 주의 및 성실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해 추천 금융상품의 핵심 정보와 자문수수료 등의 지불방법 등에 대해 공시할 의무가 있음
- 또한 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의 재무목표, 위험감내능력, 재무상황, 투자경험 및 특정 요구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LFA의 임직원도 관련 면허 소지 의무가 있으며, EFA의 임직원에게는 동 의무가 없음

- 그러나 LFA 및 EFA의 모든 임직원은 관련 교육 및 시험을 통해 관련 자격을 보유해야 함

다. 법적 환경

❑ 2012년 4월, 싱가포르 금융청(MAS)은 금융자문업동향패널(Financial Advisory Industry Review Panel, FAIR 패널)을 통해 생명보험상품과 투자상품의 판매채널 효율성 및 금융자문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격기준 제고에 주력(MAS, 2013)

○ FAIR 패널은 MAS가 의장을 맡아, 업계,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학계, 언론 및 기타 이해관계자 14인으로 구성

○ 2013년 1월, FAIR 패널은 28개 개혁 권고안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5개 주제의 골자는 다음과 같음

- 자문업자의 경쟁력 강화
- 자문업자의 질적 향상
- 금융자문업 전담 서비스 구축
- 판매채널 비용 절감
- 공정거래 문화 조성

○ MAS는 2013년 3월~6월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2013년 9월 다음과 같은 수정 권고안을 발표

- 양질의 자문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BSC(balanced scorecard) 구축
- 특정 투자상품이나 투자상품군(class)으로 인한 시장왜곡을 예방하기 위해 자문회사, 대리인 및 감독당국에 단기 금융상품 인센티브 금지
- GCE(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O level에서 GCE A level 수료, 국제 학사학위 및 싱가포르 폴리테크닉(polytechnic) 학위 등 고등교육 1년차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최소 교육수준 강화 및 연간 30시간 이상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 참여 (MAS, 2014)
- LFA 등록 기준에 해당 기업이나 CEO의 최소 경력기준을 부과하고, 독립적인 준법감시 기능을 포함

- 현재 보험중개인은 보험업법의 규제대상으로 자문업자 면허 없이도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등록된 보험중개인에게는 LFA에 준하는 전문성과 준법감시기능 요구
- LFA나 그 대표자에 허용되는 비자문업무의 유형을 별도로 정하고, 비자문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상한을 부여[4)]

○ 현행 규모 기준 수수료(volume-based remuneration) 지급을 금지하고 판매행위의 최종 성사여부와 상관없이 고정 수수료 지급 방식(fixed fee per introduction)으로 전환 유도

- 2012년 4월 MAS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는 자문수수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자문업자의 판매수수료 수취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음

라. 금융전문인력 자격 제도

❑ 싱가포르는 1974년 금융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비영리기구인 IBF(Institute of Banking and Finance)를 설립

○ IBF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중개회사 및 자산운용사 등 200여개 금융기관을 망라하는 금융산업협회로서 금융산업, 정부기관, 훈련제공자 및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금융분야의 다양한 직업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가인증교육기관임

○ IBF의 자격시험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 이 중 재무설계 및 금융자문과 관련된 자격은 CACS와 CMFAS임

- CMFAS(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Advisory Services): 증권 및 선물, 펀드매니징, 기업재무, REIT, 금융자문 등
- CACS(Client Adviser Competency Standards): 개인금융 및 자산관리 등
- CBCE(Corporate Banking Common Examination): 기업금융 등
- FMRP(Financial Markets Regulatory Practices): OTC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거래 등

❑ IBF의 자격시험 중 CACS(Client Advisor Competency Standards)는 싱가포르에서 고소득 개인고객 대상 대면 재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PB(private banking) 전문가가 취득해야 하는 전문자격으로 다음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PB 산업에 대한 CACS CPD 요구사항은 PB 행동강령(PB Code of Conduct)에 명시

4) LFA에 허용된 비자문업무의 유형은 MAS에 등록된 타금융기관에 대한 비자문서비스,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교육서비스, 부동산 및 세무서비스 등이며, 특히 LFA의 대표자가 수행하는 비자문업무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

- PB 행동강령은 적격 투자자(accredited investors)에게 재무 및 자산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정직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역량과 지식을 입증하도록 보장
- CACS CPD는 2013년 3월 적용되어 매년 최소 15시간의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해당 자문업자의 지식과 기술이 업계 및 규제 개발과 함께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함

<표 Ⅲ-11> IBF CACS의 자격시험

자격 구분	과목	시험	비고
Paper 1 : 법규 및 실무	- 자산관리 개요 - PB 행동강령(PB Code of Conduct) - 고객 상담 - 고객 관리 - 자산배분 및 상속계획	80문항(컴퓨터) 2시간 75% 합격	면제 없음
Paper 2 : 산업 및 상품 지식	- 포트폴리오 관리 절차 - 거시경제 분석 - F/X 분석 - 채권 및 주식 분석 및 전략 - 펀드 솔루션 - 대체투자 - 파생상품 - 구조화 상품 - 신용 및 레버리지	80문항(컴퓨터) 2.5시간 70% 합격	CFA 면제 (2019. 1 이후)

❑ IBF의 자격시험 중 CMFAS(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Advisory Services)는 싱가포르에서 자본시장 및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인이 취득해야 하는 전문자격으로 <표 3>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IBF는 Guidelines on Fit and Proper Criteria(Guideline No.FSG-G01)에 따라, 2016년부터 금융자문업무 담당 인력의 재교육프로그램(CDP,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을 의무화하여 금융자문서비스의 질을 관리

- 금융자문서비스 종사자는 자신의 업무유형과 관련된 CDP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규정된 기간 내 CDP의 최소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함
- 단, 기간 내 처음으로 금융자문 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재교육프로그램을 면제(MAS Notice FAA-N13 Para 33)

<표 Ⅲ-12> IBF CMFAS의 자격시험

자격 구분	과목	시험	비고
Module 1A : 증권거래 관련 법규	- 싱가포르의 자본시장 산업 및 자본시장 참여자 - 인가제도 및 사업구조 - 시장메커니즘 - 거래시스템 및 인프라 - Central Provident Fund Investment Scheme (CPFIS) - 금융범죄 방지제도	100문항(컴퓨터) 2시간 75% 합격	SGX-ST 회원, 면제 없음
Module 1B : 증권거래 관련 법규	상동	60문항(컴퓨터) 1시간 15분 75% 합격	SGX-ST 비회원, 면제 없음
Module 2A : 선물거래 관련 법규	상동	100문항(컴퓨터) 2시간 75% 합격	SGX-DT 회원, 면제 없음
Module 3 : 펀드매니저 관련 법규	- 싱가포르의 자본시장 및 자산운용시장 - 자산운용 관련 법 - 인가제도 및 사업구조 - 시장구조 및 집합투자기구 - Central Provident Fund Investment Scheme (CPFIS) - 상품요약서(Product Highlights Sheet) 작성법 - 금융범죄 방지제도	100문항(컴퓨터) 2시간 75% 합격	면제 없음
Module 4A : 기업금융 자문 관련 법규	- 싱가포르의 자본시장 및 기업금융산업 - 자본조달 - 상장제도 - 인수합병 및 기업분할 제도 - 시장구조 - 금융범죄 방지제도	50문항(컴퓨터) 1시간 15분 75% 합격	면제 없음
Module 4B : 기업금융 자문 관련 법규 (Solely Debt Securities)	상동	50문항(컴퓨터) 1시간 15분 75% 합격	면제 없음
Module 6 : 증권상품 및 분석	- 투자활동 및 금융시장 - 위험과 수익률 - 투자분석: 재무제표의 이해, 거시경제분석 - 기술적 분석 및 계량분석 - 포트폴리오 관리 - 증권 및 채권 관리 - 금융상품의 이해: 신탁상품, REITs, Traded Fund, Warrants, 외환 등 - Case Studies	100문항(컴퓨터) 2시간 70% 합격	CFA, CPA 및 회계 관련전공자, 업계 3년 이상 유경험자 등 면제
Module 6A : 증권 및 선물상품의 이해	- 증권 및 선물상품의 개요 - 선물상품의 이해 및 선물투자전략 - 옵션상품의 이해 - 워런트 및 기타 투자상품 - 다양한 구조화 상품의 이해 및 비교 - 핵심 금융상품 및 투자위험 - Knock-Out 상품의 이해 - Contracts for Differences (CFDs) - Extended Settlement Contracts - Case Studies	75문항(컴퓨터) 2시간 70% 합격	재무 관련 전공자 및 CFA 면제
Module 10: REITS 관련 상품 지식 및 관련 법규	- 싱가포르 부동산 신탁(S-REITS)의 이해 - 부동산 시장의 이해 - 부동산 가치평가의 이해 - REIT 관리, 자본조달, 가치평가 및 투자 - 핵심 비율 및 성과평가지표 - 부동산 실사 - S-REITs의 법적 환경 및 시장구조 - 부동산투자신탁과 사업신탁과의 차이 - 금융범죄 방지제도	100문항(컴퓨터) 2시간 75% 합격	면제 없음

〈표 Ⅲ-13〉 IBF의 재교육프로그램 최소이수시간

금융자문서비스 유형	핵심 CDP 이수시간	보충 CDP 이수시간
장기보험계약, 생명보험 및 모기지 관련 금융자문, 계약 등을 체결하는 금융자문업자	윤리학 6시간 또는 관련 법규 하나 이상 이수 * IBF나 SCI의 인가교육과정만 인정	10시간
투자자문, 투자계획의 마케팅 및 생명보험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자문업자		24시간

6. 소결: 국내 금융관련 자격제도 운영에의 시사점

❑ 금융상품 판매 및 자문서비스에 관한 규제는 나라마다 다름(최 훈, 2017)

○ 미국은 노동부, 증권거래위원회(SEC), 금융산업감독청(FINRA), 주 감독기구 등 복수의 기관이 자문업 시장을 감독하는데 반해, 영국(FCA), 호주(ASIC), 싱가포르(MAS) 등은 단일감독기구를 두고 보다 통합적인 감독을 수행하고 있음

○ 미국은 투자자문업자(Investment advisors)와 매매·중개업자(Broker-dealer)에게 서로 다른 주의책임 기준(Standard of care)을 적용하고 있지만,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은 자문업자의 유형이나 제공되는 자문서비스의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한 주의책임 기준을 적용함

❑ 수수료 중심의 판매 관행에서 비롯되는 이해상충 문제를 근절하고 자문서비스 제공업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제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음(금융위원회, 2015)

❑ 자문업자의 질과 자격 관리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정 이상 교육 수준과 지속 교육을 요구하고 있음

○ 주요국은 최근 제도 개선을 통해 자문업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 수준을 높이고 연간 지속 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추세임

-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계속교육프로그램(Continuing Education Program)을 자격유지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음
- 영국 자문업자들은 자체적으로 연간 35시간 이상의 지속적 전문성 배양을 수행하고 기록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함

- 호주 ASIC은 금융상품 자문업자가 충족해야 할 최소교육기준을 마련(ASIC RG 146: Licensing: Training of financial product advisers)

○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 자문업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험 등과 같은 전문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감독기관에 등록해야 함

- 미국에서는 주(State) 차원에서 증권 관련 투자자문업자에게 Series 65 등의 자격시험 통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융자문업을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인보다는 소수의 개인들이 동업하여 파트너십 형태로 금융자문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영국의 경우 PIF(Personal Investment Firm)라는 개인투자회사가 소매투자상품의 42%를 판매하고 있음

- PIF의 대표적인 판매채널이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 PIF는 2011년말 현재 5,482개로 나타났으며, 회사형태는 대부분 LC(limited company)
- 개인들은 지정대리인(AR)로 법인 형태의 금융자문회사에 고용되어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

○ 해외사례를 참고할 때, 국내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격을 법인으로 한정하는 대신에 법인의 형태를 다양화하여 사실상 개인들이 자유롭게 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업기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금융위원회, 2015)

❑ 싱가포르의 경우, 다양한 금융업권을 포함하는 국가공인교육기관을 통해 관련 자격기준을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격시험을 시행

○ 우리나라와 같이 업권별 자격시험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싱가포르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큼

-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상품자문업 및 자본시장법 상 금융자문업의 경우, 업권별 자격시험제도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
- 즉 금융자문업은 특정 업권의 지식 외에도 다양한 업권의 지식을 망라하는 폭넓은 지식을 요구하므로, 모든 업권을 포괄하는 전문교육기관 및 자격조정기구가 절실

Ⅳ. 결론: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효율적 연계 및 발전방안

1. 개인 재무설계 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 금융부문의 선진화는 실물부문의 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실물부문의 발전이 금융부문의 추가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구조의 선순환 확립에 필요

○ 금융시장의 규모와 질적인 발전은 금융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

○ 금융시장의 양적·질적 발전은 실물부문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여 여타 고부가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견인

○ 이는 추가적인 금융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의 소개에 따른 시장의 확대와 개방을 가져와 금융전문인력의 신규 수요를 창출

❑ 최근 금융산업은 과거 물리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경쟁에서 지적자산을 기반으로 한 경쟁이 격화되면서 경쟁우위의 원천으로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이를 활용하여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융전문인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

○ 최근 금융산업은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인한 인공지능, 핀테크 등의 기술 발전과 금융-비금융 간 서비스 융합 등 환경변화에 직면

○ 전통적인 금융시스템은 금융산업의 기능별 분화, 가치사슬의 재구조화, 진입 장벽의 약화 현상 등 급변하고 있음

○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양질의 금융전문인력 확보는 금융회사의 중장기 생존능력과 경쟁력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체의 양적·질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

❑ 거시환경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가계금융자산에 대한 자문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인구고령화를 배경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마련을 위한 효율적 자산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계 금융자산 운용을 지원하는 자문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확대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은 2005년 약 14.0%, 2010년 약 21.4%, 2018년 약 25.3%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되면서 연금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대한 FP전문가의 자산관리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전망

- 미국에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401k 규모가 확대되면서 NYSE 등 자본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개인들의 자산관리 수요 확대에 따른 개인재무설계 서비스가 활성화된 바 있음
- 4차 산업혁명과 로보어드바이저 등 핀테크 확산에 따른 FP들의 대면서비스와 인공지능(AI) 및 자동화기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형(hybrid-type)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
- 미국의 투자은행 Merrill Lynch는 2017년부터 Hybrid Digital-Human Advice Platform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이미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 이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계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무설계 분야의 금융전문인력 양성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 중 하나임

- 2018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1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UN이 고령사회로 지목한 바 있음

❍ 한국 가계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계 및 개인의 재무설계 서비스 전문인력의 중요성이 점증하는 이유임

2. 선진국 사례의 국내자격제도 적용방안

가. CFP와 해외 금융전문인력 자격증 내용 비교

❑ CFP와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금융전문인력 자격증의 내용을 비교한 결과, CFP의 하위영역은 영국의 QCT, 호주의 AFSL/NCFS, 일본의 재무설계 기능검정/AFP과 가장 유사함

- ○ CFP와 영국의 QCT의 내용을 비교하면, 재무설계원론과 재무설계 직업윤리,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은퇴설계, 투자설계, 세금설계 등의 내용이 유사하며 차이점은 CFP에는 부동산설계가 있는데 영국의 QCT에는 부동산관련 내용이 없음
- ○ CFP와 호주의 AFSL/NCFS의 내용을 비교하면 AFSL은 금융상품 자문과 관련된 지식을 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 NCFS에는 규제와 행위준칙, 금융상품과 금융시장에 관련된 내용이 필수과목으로, 투자/보험/부동산자문 내용이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차이가 있음
- ○ CFP와 일본의 재무설계 기능검정/AFP의 내용을 비교한 결과, CFP와 일본의 재무설계 기능검정 내용이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일본의 재무설계 기능검정은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시험이 따로 있고, 자격등급을 영역별로 1, 2, 3급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 ○ 이외에 미국의 Series 65는 투자설계와 법률적 내용에 치우쳐져 있으며, 싱가포르의 CACS/CMFAS 역시 법규와 금융산업 및 금융상품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해외 금융전문인력 자격증과 비교할 때, CFP에서 보완할 점은 실무 역량을 평가하는 부분이 없다는 것임

- ○ 영국은 재무설계 실무가 포함되어 있고, 일본은 필기시험 외에 실기시험이 있으며, 호주는 금융자문 실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표 Ⅳ-1> CFP와 해외 금융전문인력 자격증 내용 비교

CFP	미국 : Series 65	영국 : QCT (Qualification and Credit Test)
재무설계원론 재무설계 직업윤리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은퇴설계 부동산설계 투자설계 세금설계 상속설계	경제지표 투자 상품 특성 고객 투자 자문 관련 법률, 규정, 가이드라인	금융서비스 규제와 윤리 투자원칙과 위험 개인세금 연금 및 노후설계 보장성 상품 재무설계 실무
호주	**일본**	**싱가포르**
AFSL (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ce)	재무설계 기능검정	CACS (Client Adviser Competency Standards)
[일반지식] 1종 금융상품을 자문하는데 요구되는 지식 경제환경, 금융시장, 금융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1종 금융상품 : 보험 상품, 소비자신용보험, 은행예금 등) [전문지식] 특정 금융상품을 자문하는데 요구되는 분야별 지식 재무설계, 증권 파생상품 자산운용 연금 보험 예금 외환 주택저축 신용증거금대출 공해배출권	[필기시험] 생활계획 및 자금계획 위험관리 금융자산운용 세금 기획 부동산 상속 및 사업승계 [실기시험] 개인자산상담업무(1,2,3급) 중소 사업주 자산 상담업무 및 생명보험 고객자산상담업무 및 손해보험 고객자산 상담업무(2급) 보험고객자산상담업무(3급) 자산 설계 제안(1,2,3급)	법규 및 실무 산업 및 상품 지식
NCFS (National Certificate in Financial Services) [인가 및 등록]	AFP	CMFAS (Capital Cmarkets and Financial Advisory Services)
[필수과목] 규제와 행위준칙 금융자문과 상품 경제와 금융시장 금융자문 실무 [선택과목] 투자자문 보험자문 부동산상품자문	재무설계 기초 금융 자산 운용 설계 부동산 운용 설계 라이프 플래닝 및 은퇴설계 리스크와 보험 세금 기획 상속·사업 승계 설계 제안서 작성	Module 1(A,B) : 증권거래 관련 법규 Module 2A : 선물거래 관련 법규 Module 3 : 펀드매니저 관련 법규 Module 4(A,B) : 기업금융 자문 관련 법규 Module 6 : 증권 상품 및 분석 Module 6A : 증권 및 선물상품의 이해 Module 10 : REITS 관련 상품 지식 및 관련 법규

나. CFP와 해외 금융전문인력 자격증 응시자격 비교

❑ CFP와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금융전문인력 자격증의 응시자격을 비교한 결과 일본의 자격제도가 가장 유사함

○ CFP와 유사하게 일본의 재무설계 기능검정은 1, 2, 3급으로 구분되어 있어, 3급은 제한이 없으나 1급과 2급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이전등급 시험을 합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 AFP 역시 인증교육과 2급 재무설계 시험을 합격해야 응시자격이 주어짐

○ 미국과 싱가포르의 자격제도 CACS와 CMFAS는 모두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 영국의 QCT와 호주의 AFSL/NCFS는 이전등급 시험 합격 조건은 없고, 지정된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거나 수료한 경우에 응시자격을 주고 있음

<표 Ⅳ-2> CFP와 해외 금융전문인력 자격증 응시자격 비교

CFP	미국 : Series 65	영국 : QCT (Qualification and Credit Test)
유효한 AFPK 인증자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CFP 교육과정 수료자	제한없음	지정된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평가자 및 인증자 인증프로그램 수료자
호주	**일본**	**싱가포르**
AFSL (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ce)	재무설계 기능검정	CACS (Client Adviser Competency Standards)
공인 기관 교육과정 수료	[1급] 2급 기능 검정 합격자 1년 이상의 재무설계 실무경험을 가진 자 5년 이상의 재무설계 실무 경험이 있는 자 후생노동성 인증 금융 섭외 기술 심사 2급 합격자 중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실기) 금융재정사정연구회의 경우 1급 학과시험 합격자 금융재정사정연구회가 실시하는 FP 양성과정 수료자 중 1년 이상의 재무설계 실무경험을 가진 자 일본FP협회의 CFP 인증자 및 합격자 [2급] 3급 기능검정합격자 2년이 상의 재무설계 실무 경험이 있는 자 일본 FP 협회가 인정하는 공인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AFP 인증교육을 수료한자 후생 노동성 인증 금융 섭외 기술 심사 3급 합격자 [3급] 제한없음	제한없음
NCFS (National Certificate in Financial Services)	AFP	CMFAS (Capital Cmarkets and Financial Advisory Services)
공인 기관 교육과정 수료	2급 재무설계기능사 시험 통과자 AFP 인증교육을 수료한자	제한없음

다. CFP와 해외 금융전문인력 자격증 취득 후 담당업무 비교

❑ CFP와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금융전문인력 자격증 취득 후 담당하는 업무를 비교한 결과는 재무설계서비스 또는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됨

<표 Ⅳ-3> CFP와 해외 금융전문인력 자격증 담당업무 비교

CFP	미국 : Series 65	영국 : QCT (Qualification and Credit Test)
재무설계서비스 제공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자문 서비스 제공	금융자문서비스 세공
호주	**일본**	**싱가포르**
AFSL (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ce)	재무설계 기능검정	CACS (Client Adviser Competency Standards)
금융자문서비스 세공	고객의 정보 분석을 통해 라이프 플랜 수립 및 조언	고소득 개인고객 대상 대면 재무자문서비스 제공
NCFS (National Certificate in Financial Services)	AFP	CMFAS (Capital Cmarkets and Financial Advisory Services)
금융자문서비스 세공	자산 설계, 자금 계획 제안 및 조언	자본시장 및 금융자문서비스 제공

라. CFP와 해외 금융전문인력 자격증 인증유지 조건 비교

❑ CFP와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금융전문인력 자격증의 인증 유지 조건을 비교한 결과 시기와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이 계속적으로 자격인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미국의 Series 65, 영국의 QCT, 호주의 AFSL, 일본의 AFP, 싱가포르의 CACS와 CMFAS는 계속 교육 조건이 있음

- CFP 뿐만 아니라 일본의 AFP와 영국의 QCT, 싱가포르의 CACS와 CMFAS는 구체적인 계속교육 시기와 시간을 정해 놓았으나 미국의 Series 65와 호주의 AFSL은 계속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음

○ 반면, 호주의 NCFS와 일본의 재무설계 기능검정은 자격증 인증 유지를 위한 특별한 조건이 없음

〈표 Ⅳ-4〉 CFP와 해외 금융전문인력 자격증 인증유지 조건 비교

CFP	미국 : Series 65	영국 : QCT (Qualification and Credit Test)
2년마다 자격 갱신에 지속적인 교육 필수	계속교육요건에 의해 자격 취득 후에도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요구	자격 취득 후에서 매년 3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참여
호주	**일본**	**싱가포르**
AFSL (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ce)	재무설계 기능검정	CACS (Client Adviser Competency Standards)
계속교육요건에 의해 자격 취득 후에도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요구	없음	매년 최소 15시간의 교육 이수
NCFS (National Certificate in Financial Services)	AFP	CMFAS (Capital Cmarkets and Financial Advisory Services)
없음	2년마다 자격 갱신에 지속적인 교육 필수	자신의 업무유형과 관련된 재교육프로그램(CDP)을 규정된 기간 내 최소교육시간 이수

3. 국내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가. 금융전문인력 자격 간의 연계

❑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적격성 심사)과 한국FPSB가 인증하는 CFP/AFPK 자격제도를 연계하여 금융종사자의 자격증 시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

- ○ CFP/AFPK와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은 Core Topics가 상당 부분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시험응시생들은 각 자격에 대해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할애하고 있어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 발생 초래
  - • 미국의 예를 보면 유효한 CFP 자격인증자에 대해서는 NASAA(North American Securities Administrators Association)가 주관하는 투자자문사 자격시험인 “Series 65”가 면제됨
  - • 일본에서도 후생성이 주관하는 FP 1급기능사 및 FP 2급기능사 자격이 일본FP협회가 주관하는 CFP자격 및 AFP자격과 각각 연계되어 있음
- ○ 투자권유자문인력 등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업무는 금융소비자에게 해당 투자와 관련된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하는 CFP/AFPK 자격자의 종합재무설계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 CFP/AFPK 자격자들에게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취득을 활성화시키면 재무설계 접근방법에 의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라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CFP, CFA 등과 같은 국제인증자격의 경우, 자격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 ○ 이들 자격은 기존 국내 자격시험에 비해 높은 수준의 역량을 검정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자격시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는 면제하고 있음

❑ 금융상품자문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신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속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계속교육프로그램(Continuing Education Program)을 자격 유지 요건으로 요구

1) 금융전문인력 자격 간 연계 현황

가) CFP/AFPK 자격증과 타 금융전문인력 자격과의 연계 현황

❑ CFP/AFPK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면제

○ AFPK 교육 과정 전체 면제

-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 경영학 석사, 경제학 석사, 재무설계학 석사

○ AFPK 교육 과정 중 일부 과목 면제

- 투자자산운용사, 종합자산관리사, 자산관리사: 보험설계, 투자설계, 세금설계 면제
- 펀드 투자권유전문인력, 증권 투자권유전문인력, 파생상품 투자권유전문인력, 재무위험관리사: 투자설계 면제
- 손해사정사, 보험중개사: 보험설계 면제
- 공인중개사: 부동산설계 면제

○ CFP 교육 과정 전체 면제

-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경영학 박사, 경제학 박사, CFA

나)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 간 연계 현황

❑ 현재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증 간에는 일부 시험과목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 Ⅳ-5>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증 간 연계 내용

자격증	시험과목 면제 내용
펀드 투자권유대행인	증권/펀드투자상담사(간접투자증권판매인력) 자격자는 펀드투자, 투자권유 과목 면제
펀드 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펀드투자상담사(간접투자증권판매인력) 자격자는 펀드투자 과목 면제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자격자는 파생상품펀드 과목 면제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자격자는 부동산펀드 과목 면제
투자자산운용사	일임투자자산운용사(금융자산관리사) 자격자는 금융상품및세제, 직무유리및법규/ 투자운용및전략I 과목 면제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자격자는 투자운용및전략II/ 투자분석, 직무유리및법규/ 투자운용및전략I 과목 면제

2) 금융전문인력 자격 간 연계 방안

가) 종합재무설계/자산관리관련 자격증과 CFP/AFPK 연계

❑ 재무설계사(AFPK)와 자산관리사(FP) 자격증의 연계

- ❍ 현행 재무설계사(AFPK) 자격증에서 교육 일부 과정(모듈2) 면제 자격에 자산관리사(FP)가 해당됨. 또한 재무설계사(AFPK), 자산관리사(FP) 시험과목은 “상속설계”와“재무설계 직업윤리”과목을 제외하고 높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음
- ❍ 이에 자산관리사(FP)의 경우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함양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어 재무설계사(AFPK) 교육 일부 과정(모듈1) 면제를 추가하여 응시자격을 완화
- ❍ 이로 인해 재무설계사(AFPK), 자산관리(FP) 자격증 간의 연계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표 Ⅳ-6> 종합재무설계/자산관리 자격증 시험과목 비교

재무설계사(AFPK)	자산관리사(FP)	종합자산관리사(IFP)
재무설계개론	자산관리 기본지식	파이낸셜플래닝
은퇴설계	보험 및 은퇴설계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투자설계	금융자산 투자설계	금융자산 운용설계
부동산설계	비금융자산 투자설계	부동산 운용설계
세금설계	세무설계	세무설계
상속설계		
재무설계 직업윤리		

❑ 재무설계사(AFPK), 자산관리사(FP), 종합자산관리사(IFP) 자격증의 연계

- ❍ 재무설계사(AFPK), 자산관리사(FP), 종합자산관리사(IFP)은 모두 자격 취득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교육 또는 계속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유지하여야함
- ❍ 하지만 3개의 자격증 중 2개 이상의 중복 자격자의 경우 계속교육 또는 보수교육의 중복 실시의 번거로움 발생
- ❍ 이에 3개의 자격증 중 짧은 자격인증유효기간을 채택하여 계속교육 또는 보수교육으로 인정함으로써 자격취득자의 부담을 줄임

<표 Ⅳ-7> AFPK와 재무설계 관련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비교

구 분		재무설계사(AFPK)	자산관리사(FP)	종합자산관리사(IFP)
자격등급		민간자격 - 등록	민간자격 - 국가공인	민간자격 - 등록
자격관리기관		한국FPSB	한국금융연수원	손해/생명 보험협회 (공동관리기관)
자격주요내용 및 직무		금융, 증권, 보험, 투자, 부동산, 세무, 법률 등의 종합지식을 이용하여 개인의 재무상황을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고객의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무계획을 수립, 실행 및 상담하는데 필요한 능력의 보유여부를 검정	금융기관 영업부서의 재테크팀, 또는 개인자산관리팀에서 고객의 수입과 지출, 자산 및 부채현황, 가족상황 등 고객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고객이 원하는 LIFE PLAN상의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산설계에 대한 상담과 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실무처리능력을 검정	고객의 재무상태 및 투자성향 등을 수집분석하고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하여 상담에 응하거나 전반적인 재무설계를 하여 그 실행을 돕는 능력을 검정
시험과목		[모듈1] 재무설계개론 재무설계직업윤리 은퇴설계 부동산설계 상속설계 [모듈2] 위험관리와보험설계 투자설계 세금설계	[1부] 자산관리 기본지식 세무설계 보험 및 은퇴설계 [2부] 금융자산 투자설계 비금융자산 투자설계	[파트 1] 파이낸셜플래닝 세무설계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파트 2] 금융자산 운용설계 부동산 운용설계
응시자격		한국FPSB에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AFPK 교육과정 수료자	제한없음	제한없음
합격기준	전체 합격	전체 평균 70% 이상 모든 과목 40% 이상	1부, 2부 모두 평균 60% 이상 모든 과목 40% 이상	파트1, 2 모두 합격
	부분 합격	모듈별 평균 70% 이상 해당 과목 40% 이상	1부 또는 2부만 합격 시	과목별 40% 이상 파트별 평균 60% 이상
합격유효기간		전체합격:합격월로부터 3년 부분합격:합격회차로부터 연이은 4회 시험	부분합격:합격회차로부터 연이은 3회 시험(년수 제한 2년)	부분합격:파트별 부분합격 후 연속되는 3회의 시험응시까지
자격유효기간		2년	3년	2년
인증유지조건		계속교육학점 이수	보수교육	보수교육 이수
기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수교육 이수 시까지 자격 일시 정지, 이수 후 자격 부활	시험 합격 후 종합자산관리사 등록교육 이수 하여야 함

나) 금융투자관련 자격증과 CFP/AFPK 연계

❑ 투자권유대행인과 재무설계(AFPK) 자격증의 연계

- ○ 기존의 재무설계사(AFPK) 자격증 교육 일부 과정 면제 자격에는 투자권유대행인이 속하지 않음
- ○ 하지만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증의 경우, 투자상품(증권, 펀드 등)과 관련된 기본지시 및 법률, 직무윤리를 평가하며 재무설계사(AFPK) 자격증의 투자설계 시험과목과 관련 내용이 유사함
- ○ 이에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증 취득 시 재무설계사(AFPK) 교육 일부 과정(투자설계) 면제 자격을 부여하여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증과 재무설계사(AFPK) 자격증의 연계성을 향상

❑ 투자권유자문인력과 CFP 자격증의 연계

- ○ CFP 자격 인증자의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 취득시 계속교육학점이 인정되지만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보수교육 또는 계속교육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
- ○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 취득자의 전문성 제고와 유지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후 보수교육 또는 계속교육이 의무화 된다면 CFP 자격증 또한 계속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연계 될 수 있음

<표 Ⅳ-8> CFP와 금융투자 관련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비교

구 분		CFP	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	펀드	파생상품
자격등급		민간자격-등록	민간자격 - 등록	민간자격 - 등록	민간자격 - 등록
자격관리기관		한국FPSB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자격주요내용 및 직무		자산관리, 위험관리, 세금설계, 은퇴설계, 상속설계 등 고객과 관련된 모든 재무설계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최적의 재무설계안을 제시해 고객의 재무 및 생애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능력 보유여부를 검정	투자자를 상대로 증권(파생결합증권 제외), 채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로 하는 자격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합격해야하는 자격시험	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로 하는 자격시험
시험과목		[제1차] - 지식형 재무설계 원론 재무설계직업윤리 위험관리와보험설계 은퇴설계 부동산설계 투자설계 세금설계 상속설계 [제2차] - 사례형	증권분석 증권시장 금융상품 및 직무윤리 법규 및 세제	펀드일반 파생상품펀드 부동산펀드	파생상품 I 파생상품 II 리스크관리 및 직무윤리 파생상품법규
응시자격		유효한 AFPK 인증자 한국FPSB에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CFP 교육과정 수료자	투자자 보호 교육 사전 이수한 금융회사 종사자	투자자 보호 교육 사전 이수한 금융회사 종사자	투자자 보호 교육 사전 이수한 금융회사 종사자
합격기준	전체	전체 평균 70% 이상 모든 과목 40% 이상	전체 평균 70% 이상 모든 과목 50% 이상	전체 평균 70% 이상 모든 과목 50% 이상	전체 평균 70% 이상 모든 과목 50% 이상
	부분	유형별 평균 70% 이상 해당 과목 40% 이상			
합격유효기간		전체합격 : 합격월로부터 5년 부분합격: 합격회차로부터 연이은 2회 시험			
자격유효기간		2년			
인증유지조건		계속교육학점 이수			
기타			투자권유자문인력자격증을 취득해야 상품 판매를 할 수 있음		

<표 Ⅳ-9> AFPK와 금융투자 관련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 비교

구 분		재무설계사(AFPK)	투자권유대행인	
			펀드	증권
자격등급		민간자격 - 등록	민간자격 - 등록	민간자격 - 등록
자격관리기관		한국FPSB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자격주요내용 및 직무		금융, 증권, 보험, 투자, 부동산, 세무, 법률 등의 종합지식을 이용하여 개인의 재무상황을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고객의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무계획을 수립, 실행 및 상담하는데 필요한 능력의 보유여부를 검정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은 제외)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의 자격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등을 제외한다.) 및 영 제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의 자격
시험과목		[모듈1] 재무설계개론 재무설계직업윤리 은퇴설계 부동산설계 상속설계 [모듈2] 위험관리와보험설계 투자설계 세금설계	펀드 투자 투자 권유 부동산펀드	금융투자상품 및 증권시장 증권투자 투자권유
응시자격		한국FPSB에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AFPK 교육과정 수료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합격기준	전체	전체 평균 70% 이상 모든 과목 40% 이상	전체 평균 60% 이상 모든 과목 50% 이상	전체 평균 60% 이상 모든 과목 50% 이상
	부분	모듈별 평균 70% 이상 해당 과목 40% 이상		
합격유효기간		전체합격 : 합격월로부터 3년 부분합격: 합격회차로부터 연이은 4회 시험		
자격유효기간		2년		
인증유지조건		계속교육학점 이수		
기타			* 과목면제대상 종전의 증권펀드투자상담사(간접투자증권판매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1과목(펀드투자), 제2과목(투자권유) 면제 * 응시불가 종전의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시험 응시 불가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제외)에 대한 매매체결 및 투자자문 업무 종사 불가(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 합격 필요)

나. 국가직무표준(NCS) 측면에서 금융전문인력 자격 연계

❑ CFA/AFPK 등 금융자문업 전문인력 관련 자격제도가 NCS 상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NCS는 국가에서 체계화하여 표준화한 직무로 산업체에서 NCS기반 인사관리와 조직관리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자문업 전문인력 관련 자격제도가 NCS 상에 노출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 등에서의 노력이 요구됨

❑ NCS에 종합재무설계 등 금융자문업과 관련된 세분류 추가가 이루어져야 함

○ PB영업을 구성하는 능력단위들은 모든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재무설계 영역 및 프로세스와 거의 동일함

- 따라서 NCS에 종합재무설계 등 금융자문업과 관련된 세분류 추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다만 이미 포함되어 있는 PB영업과의 중복성 배제와 고유성 인정을 위한 전략이 절실히 요구됨

<표 Ⅳ-10> 금융·보험 NCS 분류 (2019. 9 기준)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1. 금융	01. 금융영업	01. 창구사무
		02. 기업영업
		03. PB영업
		04. 카드영업
		05. 여신전문금융영업
	02. 금융상품개발	01. 여수신상품개발
		02. 투자상품개발
		03. 연금상품개발
		04. 카드상품개발
	03. 신용분석	01. 개인신용분석
		02. 기업신용분석
		03. 여신심사
	04. 자산운용	01. 펀드운용
		02. 주식·채권운용
		03. 파생상품운용
		04. 대체투자
		05. 신탁자산관리
	05.금융영업지원	01. 결제
		02. 채권추심
		03. 리스크관리
	06. 증권·외환	01. 증권거래업무
		02. 외환·파생업무
		03. 인수업무
		04. 증권상장업무
		05. 외화조달·외화대출업무
		06. 무역금융업무
02. 보험	01. 보험상품개발	01 보험동향분석
		02. 보험상품개발
		03. 보험계리
	02. 보험영업·계약	01. 보험모집
		02. 보험계약심사
		03. 보험계약·보전
		04. 위험관리
	03. 손해사정	01. 재물손해사정
		02. 차량손해사정
		03. 신체손해사정

4.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의 발전방향

가. 금융시장에서 개인재무설계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설계서비스의 저변 확대

❑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에서 개인재무설계(Personal Financial Planning)서비스의 기여정도를 재평가하고, 역할을 제고할 필요 있음

○ 금융시장 환경 및 기술의 변화에 맞추어 전문화된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매우 시급

- 핀테크, Big-tech, Reg-tech, 빅데이타 등 금융환경이 급속히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은 매우 중요한 국가경쟁력이 될 수 있음

○ 이미 고령사회(aged-society)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가계의 은퇴준비와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가계재무건전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

- 대부분의 한국 가계가 은퇴 이후를 위한 준비가 미흡하며, 고령화로 인한 생산력 저하와 은퇴 고령자들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 및 책임 증가, OECD기준의 48.5%에 해당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 등 고령화로 인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가계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가진 전문인력에 의한 가계 및 개인재무설계서비스의 역할 제고

○ 일반 개인과 가계도 중립적이고 전문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금융자문서비스 및 재무설계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저변을 확충하는 효과 기대

○ 효율적인 개인재무설계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생활수준의 질적, 양적 향상과 더 나아가서는 가계 재무건전성 확보와 적절한 은퇴준비가 가능할 수 있음

○ 전문적인 개인재무설계서비스의 확대 및 대중화로 인해 개인과 가계의 금융역량이 증진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에 포함된 “금융상품자문업”에서 개인재무설계서비스의 역할 제고

○ 2012년 7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지속적으로 재발의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기본법”에 “금융상품자문업”의 신설이 포함

○ 금융상품투자에 대한 자문 또한 개인재무설계의 중요성,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 과실 입증책임 전환 등의 내용으로 금융전문인력의 전문성 및 윤리성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서 개인재무설계서비스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금융시장에서 활용가능한 개인재무설계 자격증의 중요성 부각

○ 재무설계는 개인 및 가계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고 시행결과를 모니터링하는 종합 재무상담 서비스로 현금 및 신용관리, 위험관리, 투자, 은퇴, 부동산, 세금 및 상속 설계 등 개인 및 가계 경제생활에 관련되는 전 분야에 걸쳐 가계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가 긍정적으로 활성화되는 매우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임

○ 가계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 금융전문인력자격제도의 틀 안에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한 재무설계 전문자격자 양성이 필요함

○ 신뢰할 수 있는 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전문성과 윤리성이 인정되는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 금융시장과 교육 및 산업현장에서 재무설계자격증의 인증 범위와 적용 범위 확대

나. 재무설계 자격증의 발전방향

❑ 해외 선진국의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와 재무설계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벤치마크하여 향후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

○ 미국, 일본, 호주 등의 해외 선진국 사례를 통해 국제적으로 전문성과 윤리성이 인정되고 있는 재무설계 자격증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마련이 필요

○ CFP 등 국제적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금융인력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 국내 금융전문 자격증 간 상호호환 및 상호연계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신규로 도입되는 금융자문업자의 자격요건을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때에도 재무설계 전문자격증과의 상호연계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현행 국내에서 인정되고 있는 금융투자협회의 금융전문인력 자격제도를 검토하여 재무설계 전문자격제도와 상호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구체적으로 교차 자격인증, 유사 시험과목 및 교육 부분 인정, 교육 시수 교차 인정 등을 들 수 있음

- 예를 들어 CFP/AFPK 자격자는 펀드/증권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의 유사과목 부분 면제, 그리고 펀드/증권/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의 유사과목 부분 면제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미국에서는 CFP 자격인증자의 경우, NASAA가 주관하는 'Series 65' 시험이 면제됨
- 일본에서는 재무설계 1급과 2급 기능사 자격이 CFP/ AFP 자격과 각각 연계되어 있음

❑ NCS는 국가에서 체계화하여 표준화한 직무로 적극적으로 상호 연계할 필요 있음

○ CFA/AFPK 등 금융자문업 전문인력 관련 자격제도가 NCS 상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산업체에서 NCS기반 인사관리와 조직관리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자문업 전문인력 관련 자격제도가 NCS 상에 노출될 수 있도록 관련 협회 등에서의 노력이 요구됨

○ NCS에 종합재무설계 등 금융자문업과 관련된 세분류 추가가 이루어져야 함

- PB영업을 구성하는 능력단위들은 모든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재무설계 영역 및 프로세스와 거의 동일함
- 따라서 NCS에 종합재무설계 등 금융자문업과 관련된 세분류 추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다만 이미 포함되어 있는 PB영업과의 중복성 배제와 고유성 인정을 위한 전략이 요구됨

❑ CFP와 AFPK 자격 기준을 현재보다 격상시켜 인정할 필요가 있음

○ 능력단위별로 관련자격사항에 등록민간자격 제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능력단위에 CFP가 명시되어 있음

- 이는 PB영업 직무가 CFP 직무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CFP가 NCS 직무 정의에 제시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를 가진 고객"이 아닌 일반 모든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재무설계 직무가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음

다. 관련 법규의 정비

❑ 전문금융업으로서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를 법으로 정의하고 금융전문가로서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의 호칭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

○ 호주는 2016년 회사법(Corporations Act 2001) 개정으로 Financial Planner 호칭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도입했음

○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정부도 Financial Planner 호칭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음

❑ 2012년 7월에 최초로 발의되어 2016년 6월 20대 국회에 재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함

○ 동법안에 신설되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요건을 시행령에서 엄격히 제한하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CFP/AFPK 자격자들을 포함시킬 필요

- 유가증권 자문에 비해 금융상품 자문은 간접투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투자자문업의 자본요건보다는 완화할 필요
- 유가증권은 상장이라는 최소한의 선별과정만 있지만, 금융상품은 상품심사를 통해 적격상품만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됨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는 것도 투자자문업에 대한 자본 요건이 너무 강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다만 금융자문업의 자본요건을 강화할 경우 직접판매업자와 대형 금융자문업자만 금융자문을 영위하여 고소득층을 제외한 계층에게 금융자문서비스의 문턱이 높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

○ 법인에 국한된 금융상품자문업자를 개인으로 확대하고, 겸영금지 및 커미션 수취 금지 등 독립성 요건 조항은 독립된 자문업자가 일정한 지위를 확보할 때까지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

- 고객 자산을 예탁하는 금융회사는 대규모 법인에게만 허용함으로써 금융안정을 유지해야 하지만, 자문업은 별도의 기관에 고객 자산을 수탁하기 때문에 자문업자의 부도나 파산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
- 나아가 개인에게 자문업 인가를 허용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자문서비스 저변을 확대하여 금융자문업 발전의 선순환 달성 가능

❑ 금융거래와 관련된 민원, 분쟁 등의 처리결과에 대한 상세자료를 공개하고, 각종 사고로 금융행위의 영위가 금지된 자연인과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위반자, 금융관련 종사부적격자, 금융사기자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실명으로 투명하게 공시

○ 미국의 FINRA는 매월 발간되는 “Disciplinary and Other FINRA Actions”를 통해 금융규제 및 소비자보호를 위반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징계 및 제재 결과를 실명으로 공시하고 있음

라. 금융전문인력자격제도의 통합 관리

❑ 전문성과 윤리성이 담보되는 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시험을 규정하고 관리하는 전문 조직이 구성될 필요

○ 금융상품자문업은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업권별 자격시험 형태는 부적당

- 금융상품자문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업권에 해당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업권을 초월하는 지식을 요구
- 현재 업권별 자격시험제도의 상이한 자격요건 및 기초역량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

○ 전문성과 윤리성이 담보되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시험을 규정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조직이 필요

- “(가칭)금융전문인력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전문인력자격제도의 통합적인 관리를 수행하도록 함
-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감독당국(호주 ASIC) 또는 민관합동기구(영국 FSP, 뉴질랜드 NZQA와 ETITO 공동 관장)가 자격에 요구되는 역량을 정의하고, 역량을 충족시키는 교육과정을 인증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는 금융교육협의회와 유사한 형태로 금융위원회에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업권별 자격시험에 요구되는 역량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금융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 및 공급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됨
- 싱가포르의 경우, 은행, 보험, 증권 및 자산운용회사 등의 금융 관련 직업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가인증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관련 자격기준 제공 및 자격시험 시행

참고문헌

참고문헌

Ahlswede, S., “Fee vs. Commission: Quality of Advice Is Not Only Determined by Remuneration,” *DB Research Current Issues*, Frankfurt am Main, Germany: Deutsche Bank, March 27, 2012. As of August 15, 2015: http://www.dbresearch.com/PROD/DBR_INTERNET_ENPROD/PROD0000000000287079.pdf

ASIC, 2012, Shadow shopping study of retirement advice, REP 279.

Bernard, C., “MiFID II: The New Investor Protection Regime,” Linklaters, May 2014.

Bluethgen, R., A. Gintschel, A. Hackethal, and A. Müller, “Financial Advice and Individual Investors’ Portfolios,” working paper, 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March 1, 2008.

European Commission, *Retail Financial Services*, Special Eurobarometer Report 373, March 2012.

Hackethal, A., M. Haliassos, and T. Jappelli, “Financial Advisers: A Case of Babysitter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36, No. 2, 2012, pp. 509–524.

Hung, A., N. Clancy, and J. Dominitz, "Investor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 Investment Advisers and Broker-Dealers,”" in Financial Literacy; Implications for Retirement Security and the Financial Marketplace, Olivia S. Mitchell and Annamaria Lusardi, eds.,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Hung, A. and J. Yoong, “Asking for Help: Survey and Experimental Evidence on Financial Advice and Behavior Change,” in The Market for Retirement Advice, Olivia S. Mitchell and Kent Smetters, ed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e, C. T., “Presentation of Financial Advisory Industry Review Panel Report,”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speech presented January 16, 2013. As of August 15, 2015: http://www.mas.gov.sg/News-and-Publications/Speeches-and-Monetary-Policy-Statements/Speeches/2013/Presentation-of-Financial-Advisory-Industry-Review-Panel-Report.aspx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Consultation Paper on Recommendations of the

Financial Advisory Industry Review," March 5, 2013.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Financial Advisers Act (Cap. 110), Notice on Minimum Entry and Examination Requirements for Representatives of Licensed Financial Advisers and Exempt Financial Advisers: Frequently Asked Questions," updated January 10, 2014.

State Street, 2012, The influential investor: How investor behavior is redefining performance.

금융위원회, 2015,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2015.1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6. 3. 24,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

금융위원회, 201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안

박영석, 2012, 금융멘토제 도입과 활성화 방안, 2012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정책심포지엄 발표자료

박영석, 원승연, 정재만, 2013,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자문업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FP학회, 2013.7.

양승현, 2018,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 보험연구원, kiri리포트, 이슈분석, 1-7.

어수봉, 김현수, 김동규, 조세형, 2017,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방안 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고용노동부 학술연구 용역사업

연태훈, 2012,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판매와 자문기능의 정비, 금융포커스, 금융연구원.

이장원, 박의경, 김종일, 전재경, 2017, 자산관리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체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임병태, 2017, 미국 금융투자업 영위 채널(업권)별 현황 조사, 금융투자협회, 2017.1.

정원석, 2019, 판매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합리화, 보험연구원, kiri리포트, 이슈분석, 27-30.

정원석, 김미화, 2015,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중산층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재무설계를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진 익, 2009,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보험연구원

진 익, 김동겸, 2010,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검토, 보험연구원

한국FPSB, 2018,「CFP 및 AFPK 자격제도」와 「금융투자전문인력자격제도」간의 자격요건 교차운영 방안, 2018 한국FP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FPSB, 2018, 개인재무설계와 CFP자격제도, 내부 보고서

최 훈, 2017,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금융위원회, 2017.11.

한국투자자보호재단, 2013, 호주 증권투자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자문업자 의무에 관한 세부 지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KIPF 조사, 2013-10.

한국투자자보호재단, 2018, 호주 증권거래위원회(ASIC), 금융자문업자 자격요건 강화안 발표, KIPF 조사, 2018-211, 2018.11.

Q-Net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1&gSite=Q&gId=)

민간자격정보서비스 (https://www.pqi.or.kr/indexMain.do)

일본 FP 협회 (http://www.jafp.or.jp/)

일본 금융재정사정연구회 (https://www.kinzai.or.jp/)

일본 후생노동성 (https://www.mhlw.go.jp/index.html)

각 기관 홈페이지

[부록] 재무설계/ 재무관리 하위영역 관련 자격제도

1) 부동산투자 관련 자격증

<부록 표 1> 부동산투자 관련 자격증

구 분	부동산중개사	부동산자산관리전문가	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등급	국가 전문자격	민간자격-등록	민간자격-등록
자격관리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	매일경제신문사/(사)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
자격주요내용 및 직무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역량을 검정	부동산에 관련된 빌딩 등의 설비 유지관리, 빌딩점검, 임대마케팅, 임대료 및 관리비 청구 및 수금, 체납자관리, 적정 임대료 산정을 위한 시장조사, 적정임대료 책정 및 인상협상, 임대차계약관리, 임차인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 임차인 유지전략 수립 및 실행, 투자분석, 빌딩 가치제고 방안 수립 등을 통해 부동산 자산의 가치를 향상사키거나 보존시키는 직무를 검정	고객의 연령과 자산현황을 분석하여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 작성 및 우량매물 추천과 보유 기간 동안 자산운영관리로 투자수익을 극대화시켜 고객의 부동산 재테크를 성공시켜주는 부동산 자산관리 전문가 역량 검정
시험과목	[제1차 시험]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부동산자산관리전문가(20-30)	[1차] 부동산자산관리개론 주거용부동산자산관리 [2차] 부동산경매자산관리 토지자산관리 상가빌딩자산관리
응시자격	제한 없음	온라인 모바일 출석률 60%이상	제한 없음
합격 기준	▪ 전체 평균 60% 이상 ▪ 모든 과목 40% 이상	▪ 전체 평균 60% 이상	▪ 전체 평균 60% 이상 ▪ 모든 과목 40% 이상
합격유효기간	***부분합격** : 제 1차 시험 면제 (다음회의 시험에 한함)		***전체합격** : 제 1, 2차 시험 합격 이후, 12시간의 부동산자산관리 필수 실무연수 교육을 받아야 함(온라인 동영상교육 9시간, 오프라인 집체교육 3시간) * 실무연수 교육 연장은 합격자에 한해 다음 회차 시험

			까지 1회 연장 가능 *** 부분합격** : 합격회차로부터 연이은 1회 시험
자격유효기간	없음	없음	자격증 취득 후 3년
인증유지조건	없음	없음	보수교육
기타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시험 합격 후 14일 이내 자격증 신청	***필기시험 합격과 필수교육인 실무연수교육 수료 후 자격증 발급** ***합격구분** - 스텐다드(과목당 40점 이상/1차시험, 2차시험 각 평균 60점 이상 합격) -프로페셔널(과목당 40점이상/ 동회차 1차시험, 2차시험 각 평균 80점 이상 합격) ***가산점대상자(100점 만점 평균 5점/총점 25점/중복적용 안됨)** - **부동산 자격증**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빌딩경영관리사 - **부동산학 관련 학과** : 부동산학과/건축학과/도시학과/도시공학과/건축공학과/토목환경공학과/건설환경공학과 등 재학생 및 졸업생 석, 박사 학위자/부동산학과 평생교육원(학점은 행제에한함) - **관련직무 자격증 소지자** : 부동산관련직무(변호사/법무사/변리사/세무사/회계사/감정평가사/CPM/CCIM/건축기사/건축사/AFPK/CFP/ChFC, 한국금융투자협회 시행하는 자격증(펀드 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 한국금융연수원 시행하는 자격소지자(신용분석사/여신심사역/국제금융역/자산관리사(FP)/신용위험분석사(CRA))

2) 신용관리 관련 자격증

<부록 표 2> 신용관리 관련 자격증 (1)

구 분	신용상담사	신용관리사	신용상담사
자격등급	민간자격 - 국가공인	민간자격 - 국가공인	민간자격 - 등록
자격관리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협회	(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
자격주요내용 및 직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 및 소액 금융지원 상담능력, 금융회사 여신 및 여신 사후관리 담당자에 대한 신용상담능력, 금융소비자 보호기관 금융피해구제 담당자에 대한 상담능력 검정	부실채권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채권의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지를 평가 하고, 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 및 신용평가업에 대한 기본실무능력과 전문지식을 겸비하였는지를 검정	금융소외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에 대한 상담과 서민금융지원을 컨설팅하는 능력을 검정
시험과목	신용상담의 이해 신용상담을 위한 재무관리 신용상담 관련 법규 다양한 채무자구제제도	채권일반 신용관리 실무 채권관리방법 고객관리 및 민원예방	가계재무 및 신용관리 채권관리 및 민사 집행 개인회생, 파산, 면책 이론 및 실무 기업부실원인 및 구조조정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
응시자격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합격기준	▪ 매 과목 40% 이상 ▪ 전 과목 평균 60% 이상	▪ 매 과목 40% 이상 ▪ 전과목 평균 60% 이상	▪ 전과목 평균 60% 이상
자격유효기간	3년	3년	3년
인증유지조건	보수교육	보수교육	보수교육
기타		보수교육 이수 시까지 자격이 일시 정지, 이수 후 자격 부활	보수교육 외(봉사활동 30시간 기준, 경력 또는 재직 관련 자격 취득)

<부록 표 3> 신용관리 관련 자격증 (2)

구 분	개인신용평가사 (1급, 2급)		신용위험분석사(CRA)	
자격등급	민간자격 - 등록		민간자격 - 등록	
자격관리 기관	나이스평가정보(주)		(사)한국금융연수원	
자격주요 내용 및 직무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평가와 관련하여 리스크 관리 의 핵심인 CSS(개인신용평가)를 이해하고, CSS 모형개발방법론에 대한 이해 및 실제에 대한 지식 습득 및 구체적인 사례, 각종 모니터링/리포팅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검정		개인과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및 분석과 이에 관련된 리스크 측정 및 관리, 여신실행과 사후관리, 기타 각종 지표분석을 통한 기업가치분석, 사업전망 예측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는지 등을 점검	
시험과목	1차[필기] 객관식, 주관식 ▪ 금융시장입문 ▪ 개인신용평가의 이해	2차[실기] 노트북 제공, 엑셀형식 ▪ 개인신용평가 개발체계의 이해	[제1차] 객관식 선택형(5지 선다형) ▪ 통계분석 ▪ 기업신용위험분석 ▪ 여신심사 및 관리 ▪ 재무분석 ▪ 기업회계	[제2차] 주관식 서술형(선택형 혼합 가능) ▪ 신용분석과 여신심사 사례 ▪ 내부통제 및 여신관련 법규 ▪ 위험측정 및 활용 ▪ 신용위험관리
응시자격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차 시험 합격자
합격기준	▪ 매 과목 50% 이상 ▪ 평균 70% 이상	70% 이상	▪ 매 과목 40% 이상 ▪ 평균 60% 이상	▪ 매 과목 40% 이상 ▪ 평균 60% 이상
합격유효 기간	자격시험의결과 1차 시험 또는 2차 시험만을 합격한자는 연속되는 다음 3회(응시유무와는 상관없음)차 까지		합격 당해년도를 포함하여 3년	
자격유효 기간	합격 이후 5년		자격취득 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인증유지 조건	보수교육		1차 및 2차 합격 후 소정의 실무교육 이수 및 3년 이상의 실무경력	
기타			보수교육 이수 시까지 자격이 일시 정지, 이수 후 자격 부활	

3) 보험 관련 자격증

<부록 표 4> 보험 관련 자격증

구 분	개인보험심사역	보험중개사
자격등급	민간 -등록	국가 전문자격
자격관리기관	사단법인보험연수원	금융위원회
자격주요내용 및 직무	보험업계에서 개인보험심사 및 인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또는 책임자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검정	보험회사별로 상이한 보험상품의 담보내용 및 요율, 조건을 비교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정확한 보험상품정보를 전달하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 자문업무 역량 검정
시험과목	[공통부문] 손해보험 이론 및 약관해설 보험법 손해보험 언더라이팅 손해보험 손해사정 손해보험 회계 및 자산운용 [전문부분] 장기·연금보험 제3보험 자동차보험 개인재무설계	[공통] 보험관계법령 등 [손해보험중개사] 손해보험1부, 손해보험2부 [생명보험중개사] 생명보험 1부, 생명보험 2부 [제3보험중개사] 제3보험 1부, 제3보험 2부
응시자격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합격기준	▪ 매 과목 40% 이상 ▪ 평균 60% 이상	▪ 매 과목 40% 이상 득점 ▪ 평균 60% 이상 득점
합격유효기간	부분 합격 후 연속되는 1회의 시험 응시까지임	
기타	*시험과목 면제 각 자격(개인/기업보험심사역)별 최종합격자가 다른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공통과목은 면제	

4) 세무 · 회계 관련 자격증

<부록 표 5>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구 분	세무사		공인회계사	
자격등급	국가전문자격		국가전문자격	
자격관리기관	국세청		금융감독원	
자격주요내용 및 직무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자의 자격 검정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 · 감정 · 증명 · 계산 · 정리 · 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자로서, 회계감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국세심판 청구대리, 경영진단 및 경영제도의 개선과 원가계산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역량 검정	
시험과목	[제1차]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개론 상법,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 1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2차] 회계학 세법학	[제1차]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회계학	[제2차]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원가회계 재무회계
응시자격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합격기준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를 결정	절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하며,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 상대평가에 의해 합격자
합격유효기간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			
기타			*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공인회계사는 경영지도사 1차 시험을 면제 *제2차시험 합격자가「공인회계사법」제2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아야 함	

5) 금융소비자보호 · 상담 관련 자격증

<부록 표 6> 금융소비자보호·상담 관련 자격증

구 분	영업점컴플라이언스오피서	금융소비자보호상담역	은행텔러
자격등급	민간 - 등록	민간 - 등록	민간 - 등록
자격관리기관	(사)한국금융연수원	(사)한국금융연수원	(사)한국금융연수원
자격주요내용 및 직무	금융기관의 영업점에서 준법관련 법규와 감독기관의 감독규정이 정한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이를 준수하며 영업점에서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 및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그 준수사항의 이행을 점검 할 수 있는 여부를 검정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전문지식의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대내외 소비자업무 담당자로서 고객을 상담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부를 검정	창구에서 일어나는 제반 업무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한 업무수행과 정확한 업무처리로 고객에게 도움을 주고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여부를 검정
시험과목	[공통편] ▪ 준법감시제도의 도입 배경과 기초 ▪ 내부통제제도의 이해 ▪ 컴플라이언스의 기본원칙과 접근법 ▪ 영업점 컴플라이언스의 의의와 직무 ▪ 금융사고 예방 ▪ 컴플라이언스 신고제도 ▪ 직장 내 윤리 [은행편] ▪ 금융거래 업무와 컴플라이언스 업무 ▪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보험편] ▪ 보험의 기초 ▪ 보험영업과 컴플라이언스 ▪ 보험계약관리와 컴플라이언스 ▪ 보험상품 개발과 컴플라이언스 ▪ 개인(신용)정보보호와 컴플라이언스 ▪ 재보험과 컴플라이언스 ▪ 공시와 컴플라이언스 ▪ 자산운용 및 건전성 유지와 컴플라이언스 ▪ 기타 업무와 컴플라이언스 ▪ 보험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증권편] ▪ 영업점 영업행위 준칙 ▪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 준법감시 내부통제기준 ▪ 영업행위와 컴플라이언스 ▪ 불공정거래모니터링 ▪ 감독기구 및 규제 ▪ 금융소비자보호와 고객정보보호 ▪ 금융투자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이해 및 활용 ▪ 금융투자상품관련 소비자 보호제도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활용 ▪ 금융소비자보호 사례분석	[텔러기본지식] ▪ 금융경제일반 ▪ 창구실무법률 ▪ 고객서비스 및 창구마케팅 ▪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창구실무Ⅰ] ▪ 일반수신 ▪ 가계여신 ▪ 외국환 ▪ 내국환 [창구실무Ⅱ] ▪ 출납·계산 ▪ 전자금융 및 지로·공과금 ▪ 신용카드 ▪ 신탁 및 집합투자 ▪ 방카슈랑스
응시자격	제한없음	금융소비자보호 기초(사이버연수),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집합) 과정 이수한 자(총 수업시간의 85%이상을 출석)	제한없음
합격기준	▪ 과목별 40% 이상 득점 ▪ 평균 60% 이상 득점	▪ 평균 70% 이상 득점	▪ 과목별 40% 이상 득점 ▪ 평균 60% 이상 득점
자격유효기간	자격취득 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이내	-	-
인증유지조건	보수교육	-	소속은행에서 별도의 보수교육을 통해 유지
기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수교육 이수시까지 자격이 일시 정지, 이수 후 자격 부활		